

Issuing number: 8-5-2021-001013519
Issuing date: 19/02/2021

34, chemin des Colombettes P.O.Box 181211
Geneva 20, Switzerlan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International Bureau

NOTIFICATION OF EX OFFICIO PROVISIONAL REFUSAL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UNDER RULE 17(1) OF THE COMMON REGULATIONS

1. Office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Metropolitan City, 35208, Republic of Korea

2. International Registration/Subsequent Designation No. (International Registration/Subsequent Designation Date):

1515420 (14/01/2020)

3. Trademark:

VALKA

4.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ZHEJIANG HUAXIA BAMBOO AND WOOD PRODUCTS CO., LTD.
ANJI BAMBOO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ENTER (XIAO FENG
TOWN), HUZHOU CITY 313301 ZHEJIANG PROVINCE China

5. Goods/Services Affected by this Provisional Refusal:

All the designated goods/services

※ This is a total provisional refusal. The effect of this provisional refusal covers all the designated goods/services. Please be noted that a grant of protection for the partial designated goods/services is not allowed. [Act 54, Korean Trademark Act]

6. Date on which the Provisional Refusal was issued (Time Limit):

19/02/2021(19/04/2021)

7. Grounds for the Decision:

- ☐ Lack of distinctiveness
- ☒ Likelihood of confusion with others' earlier marks
- ☐ Vagueness and/or broadness of the designated goods/services
- ☐ Unconformity to "a single application for a single trademark rule"
- ☐ Other grounds

※ Please refer to item 9 for the details

8. Provisions of Refusal:

Article 34(1)(vii)

9. Details of the Provisional Refusal:

This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not eligible for registration due to the following ground:

The applied-for mark i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registered marks (see below) which were applied for regis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prior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e of the applied-for mark. [Article 34(1)(vii), Korean Trademark Act]

More specifically, the applied-for mark is identical/similar to the registered marks presented below in sound and/or meaning.

However, this refusal ground could be overcome if the applicant deletes the underlined goods and/or services listed below.

□ Information concerning the earlier mark (1)

- Filing number : 4020100023299
- Filing date : 30/04/2010
- Korean registration number : 4008935890000
- Korean registration date : 08/12/2011
-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 SAEHAN TUNGSTEN CO., LTD.
9, Geumgang-ro 1845beon-gil, Jinjeop-eup, Namy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Goods/services :

[Class 09] 유전자 칩(chips), 투약용 디스펜서(dispenser), DNA 칩, 광학유리, 굴곡유리, 비건축용 가공 광학유리, 비건축용 가공 굴곡유리, 비건축용 가공 렌즈유리, 비건축용 가공 자외선 투과유리, 비건축용 가공 적외선흡수유리, 비건축용 가공유리, 전도체피복유리, 계산자(尺), 주판, 방호용 신발, 사고/방사선조사(照射)/화재용 보호신발, 전기자물쇠, 곡척(曲尺), 목수용 자(尺), 목수용 점눈자, 부척(副尺), 턱촌목, 가스분석기구, 감압챔버, 계량대, 공기분 석장치, 과학용 증류장치, 레토르트, 레토르트 받침대, 모세관, 모형, 베타트론, 뷰렛, 산소운 반장치, 삼각석쇠, 세균배양기, 시험관, 식품분석장치, 실험기구용 발효장치, 실험실용 노(爐), 실험실용 도가니,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실험실용 자동이온교환 색층분석장치, 실험실용 쟁반, 실험실용 증류기, 실험실용 특수비품, 실험실용 회분접시, 실험용 도자기제 기구, 실험용 색층분석장치, 실험용 유리기구, 에어가스발생기, 연소순가락, 이화학장치 및 기구, 이화학장치용 격막, 입자가속기, 자동색층분석장치, 자석교반기, 표본, 피펫(Pipettes), 향습기, 향온기, 화학기기(실험용), 검사작업용 거울, 광반사막, 광학거울, 광학기계기구용 반사경, 광학기구용 미동측정나사, 광학기계{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 광학렌즈, 광학식 환등기, 광학용 대물렌즈, 광학용 보정렌즈, 광학용 아퍼토메터, 광학용 프리즘, 광학용 확대경, 광학제품, 굴절망원경, 금속류현미경, 마이크로톰(Microtomes), 망원경, 망원경 체 관[렌즈원통], 망원경용 반사경, 망원경용 삼각대, 망원경용 자동시준의(儀), 망원경용 프리즘, 망원조준기, 문에장치하는 뽀홀(Peepholes), 분광기, 비디오크린, 비디오텍사기, 사냥용 쌍안경, 생물현미경, 성좌 투영기(星座投影機), 스파이글라스(작은 망원경), 실물환 등기, 쌍안경, 영사기, 영사스크린, 영화 촬영용 반사경, 영화기기, 영화용 기계기구, 영화용 녹음기계기구, 영화용 영사기, 영화촬영용 카메라, 영화편집용 영사기, 영화필름 영사스크 린, 영화필름용 편집기, 영화필름용 편집기구, 오목거울, 입체 현미경을 포함한 현미경, 입 체경, 입체경장치, 잠망경, 접안렌즈, 접안렌즈를 포함한 기구, 증현미경, 집광기(集光器), 차 광기, 천체망원경, 천체측정용 분광사진장치, 투광기, 편광현미경, 프리즘, 플라네타륨, 현미 경, 현미경 받침대, 현미경 집광장치, 현미경검사용 해부용기구 전용용기, 현미경검사용 회절장치(回折裝置), 현미경슬라이드용 용기, 현미경용 체관 [렌즈원통], 현미경용 프리 즈, 형광스크린, 화기용 조준망원경, 화면 영사기, 확대경, 환등기, 감광판을 사용하는 카메 라, 광서터, 노출계, 다목적 카메라, 다중프레임 뷰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렌즈서터, 렌즈후 드, 분광사진장치, 비디오테코더가 장착된 휴대용 비디오키메라, 비디오키메라, 비디오키

메라[캠코더], 사진감광판용 가대, 사진기계기구용 거리계, 사진기계기구용 매거진, 사진기계기구용 셀프타이머, 사진기계기구용 주름상자, 사진기구용 노출계, 사진기구용 케이스, 사진기기, 사진기용 셔터, 사진기용 셔터릴리즈, 사진기용 조리개, 사진슬라이드용 위치조정장치, 사진슬라이드용 프레임, 사진암실, 사진암실용 램프, 사진용 건조대, 사진용 노출계, 사진용 트레이너, 사진용 선반, 사진용 섬광전구, 사진용 세척쟁반, 사진용 속도 측정장치, 사진용 스크린, 사진용 스플, 사진용 슬라이드, 사진용 앵글파인더, 사진용 자외선필터, 사진용 카메라, 사진용 파인더, 사진용 플래쉬라이트, 사진용 플래쉬라이트장치, 사진용 필터, 사진용 확대장치, 사진용기기 전용용기, 사진용품용 스플, 사진인화용 건조장치, 사진장치용 받침대, 사진제판용 스크린, 사진현상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 선형이미지센서가 부착된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사진 영사장치, 슬라이드 플레이밍장치, 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 슬라이드영사기, 인화용 광택기구, 자동초점식 영사기, 자동현상필름식 동영상카메라, 자동현상필름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천체사진용 렌즈, 카메라, 카메라 렌즈 어댑터링, 카메라 렌즈후드, 카메라 및 사진기구용 가방, 카메라 클로우저[마개], 카메라용 라이트장치, 카메라용 렌즈필터, 카메라용 뷰파인더, 카메라용 삼각대, 카메라용 셔터, 카메라용 셔터릴리즈, 카메라용 조리개, 카메라용 틸팅헤드, 카메라용 플래시건, 카메라케이스, 카메라후드, 태양사진장치, 텔레비전카메라, 플래시건, 필름용 카메라, 필름절단장치, TV카메라, 가속도계, 가속센서, 가솔린계기, 가스계량기, 가스미터, 가스시험기구, 각도게이지, 각도기, 간섭계, 거리기록장치, 거리측량기, 거리측정기, 게이지, 경도시험기, 경사계, 경위의(經緯儀), 계량기, 계량기기, 계수기, 고도계(高度計), 고무시험기, 고온계, 고음계(高音計), 공기조절기용 측정 및 제어장치, 공업용 또는 군사용 금속탐지기, 공진기, 과학용 탐침, 관측기구, 광도계(光度計), 광량계(光量計), 광속계, 구경측정용 링, 구면계(球面計), 구조시험기, 굴절도계(屈折度計), 권척(卷尺), 균형시험기, 금속강도시험기, 금속경도시험기, 금속압축시험기, 금속재료시험기, 기본단위계량기기, 기상관측용 기구(氣球), 기상관측용 제기계 자침, 기상관측용구, 기압계, 기체측량계, 길이게이지, 길이측정기구, 나사측정기계기구, 나사태핑용 게이지, 나침반, 내후검사기, 농도계, 뇨비중계, 눈금측정장치, 당도계, 대들보(Cross beam) 깊이 측정기, 대저울[수평저울], 동력계, 동력측정계, 되, 디젤유 방출시험기, 로그(Logs),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계기, 말(계량기), 면적계, 목재시험기, 미소경도시험기(微小硬度試驗機), 밀도계, 바리오미터(Variometers), 방위측정기, 방향지시나침판, 밸브압력지시계용 플러그, 보수계(步數計), 분량계, 불쾌지수계, 불투명도 측정기, 브레이크액 검사장치, 비교측정기, 비의료용 시험장치, 비의료용 온도계, 비의료용 진단기구, 비중계, 비틀림시험기, 비행시험장비, 사진측정기, 산(酸)용 비중계, 색채계(色彩計), 섬유재료시험기, 소음계(騒音計), 소음레벨측정기, 속도계, 속도계 시험기, 수량미터, 수맥탐지봉, 수송기계기구용 속도검사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온도조절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 수송기계기구용 타이어의 저압자동표시기, 수심 측정기, 수심측정장치 및 기계, 수위계, 수은수준기, 수준계, 수준기(水準器), 수준의, 수준표척, 수평저울[대저울], 슬라이드캘리퍼스, 습도계, 습도자동조절기계기구, 시멘트시험기, 실 계수기, 아황산정량계, 알콜분계량기, 압력계, 압력기록계, 압력센서, 압력자동조절기계기구, 압력지시계, 압력측정장치, 압축시험기, 액면계, 액면자동조절기계기구, 액체비중계, 액체수준센서, 액체자동조절기계기구, 앨리데이드(Alidades), 약량계(藥量計), 양장점용 자, 에그타이머(egg timers), 연성시험기, 연추선, 연추선의 추, 열량계, 열량자동조절기계기구, 염분계, 오염감지기, 오일수준센서, 온도센서, 온도조절장치, 온도지시기, 우량계, 우편요금미터, 유도단위계량기기, 유량계, 유리눈금식 저울, 유즙비중계, 육분의, 인공기상장치, 인장시험기, 일조계, 자기콤파스, 자동고도계, 자동액체수위제어기계기구, 자동액체유동제어기계기구, 자동액체합성제어기계기구, 자동연소조절기계기구, 자동온도조절기, 자동조절기기, 자오의, 자이로미터, 자이로 자기콤파스, 자이로콤파스, 자전거 속도계, 재료시험용 기구 및 기계, 재료실험기기, 저울,

저울추, 전기식 측정장치, 전선의 직경측정장치, 전자기계식 진동계, 전지용 산(酸)정량계, 점도계(粘度計), 정밀 경위의(經緯儀), 정밀저울, 정밀측정기기, 정밀측정장치, 조도계(照度計), 좌표측정계, 주차미터기, 지그(Jigs), 지뢰매설물탐지기, 지중온도계, 지진계, 진공자동조절기계기구, 진공측정기, 진동계, 천정의(天頂儀), 천체의, 천체측정기계기구, 측상간격 시험기, 충격시험기, 충전량 감지기, 측량기구, 측량기구용 삼각대, 측량기기, 측량용 기계기구, 측량용 나침반, 측량용 수준기, 측량용 유리기구, 측량용 자기compass, 측량용 줄, 측량용 타깃, 측량용 표척, 측력계, 측연(測鉛), 측연선(測鉛線), 측정기구, 측정용 숟가락, 측정용 자, 측정용 테이프, 측정의, 측정장치, 측한[측봉], 치마단용 표지, 캘리퍼스, 콘크리트시험기, compass, 타이머, 타이머 압력 측정기, 타코미터(Tachometers), 택시미터(Taximeters), 투명도측정기, 트란시트, 파생단위측정기계기구, 팔분의, 편광계, 편지저울, 평면도측정기계기구, 평판{측량기구}, 평형장치, 표면거칠기측정기, 표척{측량기구}, 풍속계, 풍향계, 프로그램조절기계기구, 플라스틱시험기, 피부두께측정기, 피혁두께측정기구, 한란계, 항해기기, 항해용 compass, 회전계, 회전수계수기, 회전의(回轉儀), 극장용 안경, 금속제 및 합성물질제 안경테, 단안경용 테, 독서용 안경, 미장착된 안경테, 방진안경, 방현(防眩)안경, 보안용 책, 보정용 안경, 보통안경, 보호안경, 보호용 점안경, 선글라스, 선글라스용 렌즈, 손잡이안경, 수중안경, 스노우 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안경, 안경 및 선글라스용 케이스, 안경알, 안경용 줄, 안경용 측면보호대, 안경용 코드, 안경줄, 안경집, 안경테, 안경테 및 선글라스테, 안경테 및 코안경테, 안경홀더, 어린이용 안경, 얼음안경, 오페라 글라스, 외알안경, 잠수용 고글, 차광안경, 코안경, 코안경용 줄, 코안경줄, 코안경집, 코안경테,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세척기, 콘택트렌즈용 용기, 편광안경, 필드용 안경, 가산기(加算器), 계산기, 계산기 작동식 기계장치, 계산기구, 계산용 원반, 금전등록기, 동전계수 및 선별기계, 사무용 펀치카드기계, 사진복사기, 송장(送狀)작성기계, 수동계산기, 시간기록기계, 시간기록장치, 우표첨부확인장치, 위조동전검출기, 자동금전등록기, 자동현금인출기[ATM], 작업기록기, 전기계산기, 청사진장치, 총액계산기, 크레딧카드기계, 크로노그래프[시간기록장치], 타임레코더,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 및 날짜스탬프, 표수(票數)계산기, 현금교환기, 현금자동분류집계기, 화폐계수 및 선별기계, 화폐계수기, 회계기, 가솔린스테이션용 장치, 연료펌프용 자동조절장치, 유류주입기, 주유기기, 주유소용 가솔린펌프, 주유소용 연료분배펌프, 주유소용 장치, 개인용 사고대비장구, 구명망(求命網), 구명벨트, 구명부표, 구명용 슈트, 구명장치, 구명재킷, 날개꼴 부낭, 방탄조끼, 사고대비용 보호망, 수영벨트, 수영용 또는 목욕용 부낭, 수영재킷, 안전망, 안전방수포, 안전벨트, 응급처치 교육용 마네킹, 자동발신기, 작업용 무릎보호대, 조난신호기, 산불진화용 안전기구, 소방용 석면제 방호물, 소화기, 소화기기, 소화용(消火用) 두들기는 기구, 소화용(消火用) 모포, 소화용(消火用) 스프링클러장치, 소화전(消火栓), 소화탄, 소화호스용 노즐, 자동소화장치, 자동차용 소화기, 화재 피난장치, 가스누출경보기, 경보기, 경보기기, 경보용 벨, 도난경보기, 도난경보기{차량용은 제외}, 도난방지용 경보장치, 불꽃감지기, 사이렌, 연기감지기, 연기탐지기, 열감지기, 음향경보기, 인화성 가스 검출용 경보기, 전기 및 전자식 도난경보기, 전기식 경보벨, 전기식 도난방지장치, 화재경보기, 경적, 교통사고방지용 착용반사판, 교통신호등, 기계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표지, 반사판, 발광식 교통신호기, 발광식 또는 기계식 교통신호기, 발광식 또는 기계식 교통신호판, 발광식 또는 기계식 도로표지, 발광식 또는 기계식 신호기, 발광식 또는 기계식 안전신호판, 발광식 또는 기계식 안전표시판, 발광식 또는 기계식 표지판, 발광식 표지, 발광식 향로표지, 부저, 비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섬광식 신호, 식별용 부표{발광식}, 신호용 랜턴, 신호용 벨, 신호용 부표{발광식}, 신호용 회전등, 점멸신호등, 차량고장경고용 램프, 차량고장경고용 발광식 삼각표지, 차량고장경고용 삼각표지, 철도용 신호기, 해상용 신호장치{발광식 또는 기계식}, 수영용 귀마개, 수영용 안면마스크,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탱크,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산소통, 잠수용 호흡장치, 잠수용장치, 호흡장치{인공호흡용은 제외}, 자동식 회전막대 출입구, 전기식 문 개폐장치, 전기식 문닫힘장치, 전기식 문열림장치, 주차장용 동전작동식 게이트, 리프트조작장치, 엘리베이터조작장치, 구멍뚫목, 구멍보트, 소방정, 과학용 인공위성, 인공위성, 소방자동차, 소방차, 자동차용 여승연라이터, 아크용접기, 전기아크 절단장치, 전기아크식 용접인두, 전기아크용접장치, 전기용접장치, 가축사육용 전기 울타리, 검란기(檢卵器), 아연도금장치, 오존발생기, 이온화장치{공기처리용은 제외}, 전기도금장치, 전해조, 전기식 포장용 플라스틱씰 장치, 가감저항기, 감쇠기, 계전기, 계전기 및 변압기, 고주파 교환 전원공급장치, 단권(單捲) 변압기, 단로기, 동력제어기, 리액터, 무대조명조절용장치, 배선험, 배전기기, 배전반, 배전제어판, 배전판, 배전함, 벨용 푸쉬버튼, 분기함, 분배변압기, 불꽃방지구, 셀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전자기적스위치], 수송기계기구용 전압조정기, 원형 플러그 커넥터, 유도자, 유도전압조정기, 자동배전기, 자동배전반, 자동타임스위치, 전기 리듀서, 전기단자, 전기배전용 블록, 전기배전함, 전기변압기, 전기변압기기, 전기스위치, 전기식 조광기(調光器), 전기식 조절장치, 전기용 인버터, 전기용 제어판, 전기자, 전기저항기, 전기전환기, 전기접속구, 전기접점, 전기제어기기, 전기제어장치, 전기제어판, 전기조명기구용 형광등 안정기, 전기커넥터, 전기커패시터[축전기], 전기컨넥터, 전기통신기구용 퓨즈, 전기퓨즈, 전류변환기, 전류스위치, 전류제어기, 전류제한기, 전선용 스플라이스, 전선용 접속구, 전선용 접속기, 전선용 커넥터, 전압감응압 방지기, 전압모니터용 모듈, 전압안정 전원공급장치, 전압안정장치, 전압조정기, 전원스위치, 전지충전기, 점멸기(點滅器), 점속함, 정류기, 정류기 모듈, 정류용 전기장치, 정류자, 제어판, 조도조절장치, 조명기구안정기, 조상기, 증폭용 전기변압기, 차단기, 차동스위치, 축전기[콘덴서], 축전지충전기, 충전장치, 퓨즈, 퓨즈선, 플러그 커넥터, 피뢰기, 피뢰침, 피뢰침[봉], 합금제 퓨즈선, 혼선방지장치, 회로차단기, 회전변류기, 네온사인, 스포트라이트설치용 대전(帶電)레일, 갈바니전지, 건전지, 고압전지, 광전지, 니켈 카드뮴 축전지, 수송기계기구용 축전지, 습전지, 양극전지, 연료전지, 이동전화기구용 전지, 전지, 전지용 그리드, 전지케이스, 점등용 전지, 점화용 전지, 축전지, 축전지상자, 축전지용 극판, 축전지조, 태양전지, 회충전등용 전지, 검류계, 공중선측정기, 광주파수 계측장치, 발진기, 오실로그래프, 용량측정기, 위상계, 자기측정기, 자기측정기기, 저항계, 저항측정기, 적산전력계, 전기손실지시계, 전기용 지시계, 전기자기측정용 검출기, 전기측정기기, 전력계, 전류계, 전압계, 전파측정기, 전파측정기기, 주파수계, 진공관특성측정기, 회로계, 고전력 빔 전송용 도파관, 고전류용 안테나케이블, 광섬유, 광섬유 접속슬리브, 광섬유 케이블, 광신호 전송용 케이블, 광전도 필라멘트, 광케이블, 나선(裸線), 동력케이블, 라디오중계용 케이블, 미네랄 절연 전기케이블, 비선형 광섬유, 송전선용 재료, 와인딩 와이어(감는 전선), 유선텔레비전 송수신용 케이블, 음향 및 영상 전송용 전선 및 섬유, 자기선, 자기식 전화선, 자동차시동장치용 케이블, 저항선, 전기도관, 전기도체, 전기동축케이블, 전기신호 또는 광신호 전송용 케이블, 전기신호 및 광신호 전송장치용 케이블, 전기케이블, 전기케이블용 덕트, 전기케이블용 시스, 전기케이블용 접속슬리브, 전선, 전선 및 케이블, 전선관, 전선식별용 섬조(纖條), 전선용 시스, 전신선, 전자용 케이블, 전화선, 절연동선, 점프스타트용 케이블, 접속용 슬리브, 접속용 전기케이블, 접속케이블, 접속함(接續函), 종단함, 통신케이블, 플러그인 커넥터, 피복전선, 필터 일체형 전기동축케이블, 확장케이블, 유인살충용 전기장치, 전기 버저,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전기다리미, 전기모기채취기, 전기식 도어벨, 전기식 헤어컬기, 전기식 화장제거기구, 전기인두, 전열식 양말, 공(空)비디오테이프, 공(空)오디오테이프, 구술(口述)녹음기, 녹음기, 녹음기 또는 VTR 헤드청소용 테이프, 녹음기계기구, 녹음디스크, 녹음매체, 녹음재생기구, 녹음테이프, 단거리용 라디오, 동전작동식 자동음악연주장치, 디지털 콤팩트디스크용 레코드플레이어, 라디오, 라디오 혼선차단용 필터, 라디오수신기, 레코드덱, 레코드원반, 레코드청소장치, 레코드플레이어, 멀티플라이어, 메가폰, 무선라디오통

신장치,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비디오레코더,비디오카세트,비디오카세트레코더,비디오 테이프,비디오테이프레코더,사운드믹서기,수송기계기구용 라디오,스테레오,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오디오 및 비디오용 미처리 콤팩트디스크,오디오 및 비디오용 콤팩트디스크,오디오비디오수신기,오디오테이프 레코더,위성수신기,음성 기록 및 재생용 장치,음악용 주크박스,음향 또는 영상의 전송/재생용 장치,음향 및 비디오의 기록 및 재생기구,음향 및 신호재생용 라디오수신기 및 모니터,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음향 증폭기,음향/영상매체용 기록 및 재생장치,음향녹음장치,음향도관,음향송신장치,음향재생장치,음향커플러,자기식 테이프레코더,자동차용 방송튜너,자동차용 텔레비전,전기음향 트랜스듀서,전기음향영상기기,전기축음기,증폭용 확성기,진동판,진폭제한기,차량용 비디오레코더,차량용 카세트플레이어,천 재질의 라디오장치용 음향필터,축음기,카세트레코더,카세트플레이어,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테이프레코더용 공(空)자기테이프,텔레비전 모니터,텔레비전 수신기,텔레비전 위성방송수신기,텔레비전용 디코더,텔레비전장치,토크머신,통합증폭기가 내장된 사운드 믹서기,파워증폭기,헤드폰,확성기,확성기계기구,확성기용 나팔,확성기캐비닛,확성시스템(PA시스템),휴대용 라디오,CD플레이어,DVD 플레이어,MP3 플레이어,검파기,검파기용 인터페이스,고속전기모터용 전자식 주파수변환기,고정국다중통신기계기구,고정국단일통신기계기구,고정국용 단일채널 무선통신기기,고주파장치,공업용 원격제어전기설비,공중전화기,나선반송기계기구,녹음디스크청소장치,다이얼,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용 중계기,라디오 및 텔레비전 안테나,라디오송신기,라디오프로그램 및 라디오중계메시지 송신장치,레이더기계기구,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마이크로폰,모뎀,무선안테나용 지주(支柱),무선전신기,무선전화기,무선전화기용 단말기,무선통신용 안테나,반송중계기계기구,방송용 비디오카메라,방연광 광석 검파기,방향탐지기,배전반표시등,변성기(變成器),보안기,비디오 멀티플렉서(다중송화기),비디오 송신장치,비디오폰,비상신호 송신기,사진전송기,상호통신장치,선박용 통신기계기구,수동교환기,수동전신기,수송기계기구용 항법장치,수화기용 소독기,신호의 원격제어용 전기역학장치,안테나,안테나 필터,액추에이터용 주파수 변환기,어댑터,영상음향(AV)수신기,워키토키,원격전기점화장치,원격제어장치,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원격파괴장치,위성안테나,위성이용항법장치,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음향전송기구용 개인용 헤드폰,음향정보의 무선전송장치,이동전화기,이동전화기용 케이스,이동전화기용 키보드,이동전화기용 핸드프리장치,이어폰,인공위성 통신용 위성접시,인공위성항행위치 및 지구위치 결정장치,인쇄전신기,인터콤,인터폰,자기테이프 클리너,자기헤드 클리너,자동교환기,자동응답기,자동전신기,자동전화교환기,자동차용 안테나,전기어댑터,전기코일,전기코일용 홀더,전기통신기기,전기통신용 송신기,전기통신용 송신장치,전력선반송기계기구,전신장치,전자기코일,전화기,전화기용 커넥터,전화기용 케이스,전화기용 핸드프리키트,전화기용 헤드셋,전화녹음기,전화단말기,전화송화기,전화수화기,전화자동응답기,전화자동응답장치,전화장치,전환기,주파수 변환기,중계교환기,증폭기(앰프),증폭기가 장착된 레이더수신기,차량용 안테나,차량용 통신기계기구,철도전철기(轉轍器)의 원격제어용 전기역학장치,초킹코일,케이ابل반송기계기구,텔레비전 송신기,텔레비전용 프롬프터,텔레타이프라이터,텔레프린터,통신기구용 전기레지스터,통신기구용 전기커패시터,통신용 교환기,통신용 송신기,통신용 송신장치,통신장치용 마이크로폰,통화관,팩시밀리,팩시밀리 송수신장치,팩시밀리 통신장치,팩시밀리시스템 장착용 이동전화기,페이저,포물선형 안테나,픽업,항공기용 통신기계기구,항공용 라디오통신기기,항법기구,해상경비용 레이더,호출기,휴대용 전화기,휴대용 통신기계기구,휴대폰,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가이거계산기,감열식 프린터,개인용 컴퓨터,공업용 방사선장치,공업용 방사선투시스크린,광디스크,광디스크 판독기,광디스크드라이브,광스캐너,광자기펜,광전

관(光電管),광학데이터매체,광학문자 인식용 소프트웨어,광학식 문자판독장치[OCR], 광학식 판독기,기록된 게임용 컴퓨터프로그램,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노트북컴퓨터,다기능 키보드,데이터처리장치,데이터처리장치용 프린트회로 형태의 인터페이스 카드,디스켓 및 콤팩트디스크용 케이스,디스크메모리,디지털 디스크 드라이브,디지털 신호 처리장치,디지털 입출력 스캐너,디지털 컬러복사기,디지털 컬러프린터,라디오용 열전자관,랩탑컴퓨터,레이저측정장치,레이저프린터,마더보드[메인보드],마우스,마우스 패드,마이크로칩카드,마이크로컴퓨터,마이크로프로세서,메모리 확장모듈,메모리판,무선콘텐츠 전송용 컴퓨터소프트웨어,문서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바코드스캐너,바코드 판독기,발광식 전자포인터,발광식 포인터,방사선 치료분야의 선량측정용 소프트웨어,브라운관,비디오 모니터,비디오게임카트리지,비의료용 레이저,비의료용 X-선관,비의료용 X-선발생장치 및 시설,비의료용 X-선방호장치,비의료용 X-선사진,비의료용 X-선장치,비조명용 방전관,비조명용 전기식 방전관,비행시뮬레이터,사이클로트론,상품용 전자꼬리표,수송기계기구조종 및 제어용 시뮬레이터,수중청음기계기구,스캐너,신용조회용 소프트웨어,암호화용 컴퓨터소프트웨어,열전자램프 및 열전자관,영상/그래픽/텍스트 처리용 소프트웨어,영상/음향/비디오용 컴퓨터프로그램,오디오장치의 음질제어 및 향상용 소프트웨어,외부스크린 또는 모니터에 사용적합한 게임장치,외부스크린 또는 모니터에 사용적합한 오락장치,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장치,워크스테이션,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음파탐지기,음향측심기,음향탐지기구,이동전화기 사진전송용 컴퓨터소프트웨어,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이미지 처리용 전자카드,인코드된 신원확인용 자석팔찌,잉크젯 프린터,자기(磁氣)기록매체,자기(磁氣)데이터매체,자기디스크,자기디스크용 실드케이스(차단케이스),자기식 물체탐지기,자기식(磁氣式) 인코더,자기탐광기,자기탐지기,자기테이프,자기테이프용 자기제거장치,자동서비스단말기 제어용 컴퓨터소프트웨어,자동차 운전 연습용 시뮬레이터,자동표면제어식 스캐너,전광게시판,전기식 모니터장치,전열블랭킷,전자 트랜지스터,전자 거래용 보안단말기,전자게시판,전자관,전자금전등록기용 컴퓨터프로그램,전자다이어리용 케이스,전자도난방지,전자메모리,전자메일 보안용 소프트웨어,전자복사기,전자수첩,전자식 경고벨,전자식 문달힘 시스템,전자식 조립카드,전자식 코드화장치,전자식 표시판,전자신호송신기,전자응용자동문개폐장치,전자자동판매기,전자지불단말기,전자총,전자카드리더기,전자컴퓨터,전자타이머,전자타자기,전자펜,전자표시판,전자현미경,전자회로학습기,접속허용 또는 진입제어용 컴퓨터프로그램,정류관(整流管),정전식 복사기,중앙경보장치,중앙처리장치[프로세서],증폭용 전자관,지진탐광기계기구,진공관,집광발전검용기,집적회로가 내장된 카드,초음파살충기,초음파응용측심기,초음파응용탐상기,초음파응용탐지기,칩카드,칩카드 리더기,카드판독장치,커플러,컬러프린터,컴퓨터,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소프트웨어,컴퓨터기억장치,컴퓨터모니터,컴퓨터모니터용 프로그램,컴퓨터용 디스크드라이브,컴퓨터용 손목 지지대,컴퓨터용 인터페이스,컴퓨터용 자기테이프장치,컴퓨터용 주크박스,컴퓨터용 프린터,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컴퓨터주변기기,컴퓨터키보드,케이블점검패널,코드화된 자기카드,크레딧카드용 카드리더기,키보드,탁상용 전자계산기,태양광자동추적센서,터치패널,터치패드,통신용 컴퓨터,트랙볼,트랙볼 입력장치,판독기(데이터 처리장비),판매시점관리(POS)용 단말기,팩시밀리 프로그래밍용 컴퓨터소프트웨어,폐쇄회로,포켓용(휴대용) 컴퓨터,프로세서,플로터,플로피디스크,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필기용 휴대 컴퓨터,항공기 제어장치 관리용 컴퓨터,항공기용 비행시뮬레이터,홀로그램,휴대용 스캐너,휴대용 전자계산기,휴대용 전자계산기용 케이스,휴대용 전자번역기,CD-ROM,IC카드,LCD 대형스크린 표시장치,LCD(액정표시장치)패널,PDA,TV세트용 동전작동식 기계장치,TV수상기

전용 오락장치,다이오드,대규모 집적회로(LSI),레이저 다이오드,반도체,반도체메모리,반도체메모리장치,반도체소자,반도체웨이퍼,반도체전원소자,발광다이오드,웨이퍼,인쇄회로기판용 시험기구,전기다이오드,전자반도체,전자집적회로,전자회로기판,전자회로용 커넥터,집적회로,집적회로가 내장된 회로기판,집적회로모듈,초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칩[집적회로],탄화규소 다이오드,터미스터,트랜지스터,포토다이오드,프린트회로(回路),회로기판,다중콘센트용 소켓블럭,대음극(對陰極),소거용 자석,소켓/플러그 및 기타 접점(전기 코넥터),소켓{전구소켓은 제외},안전용 콘택트플러그,양극,용접용 전극,음극,음극용 부식방지장치,자석,자석심,장식용 자석,전극,전기 콘센트 덮개,전기소켓,전기플러그,전자석,집전극,플러그,플러그 어댑터,플러그/소켓 및 기타 접점(전기 코넥터),휴대용 소켓,흑연전극,개호출용 호각,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nose clip),레굴레이터,부대(浮袋),수영용 노즈클립,신호용 호각,에르고미터(ergometer),공업용 X-선 방호장갑,귀마개{산업용},방음용 귀마개{의료용은 제외},방호용 귀마개,방호용 장갑,사고방지용 석면장갑,사고방지용 장갑,잠수용 장갑,보호헬멧,스포츠용 보호 헬멧,스포츠용 헬멧,승마헬멧,오토바이용 헬멧,오토바이운전자용 헬멧,용접용 헬멧,용접작업용 헬멧,헬멧,가스마스크,공기여과용 마스크,방독마스크,방독면,방진고글 및 방진마스크,방진마스크,방호용 마스크,보호마스크,보호헬멧용 페이스실드(안면보호대),안면보호용 실드(shields),용접마스크,작업용 안면보호기구,치아보호구,호흡마스크용 여과기,방호용 피복,방화용 비행복,방화용 석면피복,방화피복,비행용 보호복,사고/방사선조사(照射)/화재대비용 피복,살균처리된 실험실 복,잠수복,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레코드판,레코드플레이어용 바늘,레코드플레이어용 바늘교환장치,레코드플레이어용 속도조절기,레코드플레이어용 톤암(Tone arms),메트로놈(Metronomes),수동축음기,음반,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음악이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자기식 열쇠카드,자기식 전철표,자기식 전화카드,자기식 카드,자기식 크레딧카드,자기식 ID카드,자기식(磁氣式) 신분카드,노광(露光)된 슬라이드필름,노광(露光)된 영화필름,노광(露光)된 필름,노광(露光)된 X-선필름,만화영화,슬라이드필름,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복사기,귀마개,고글,디스크,테이프,CD,DVD,보일러 제거기구,비상용 및 구멍용 장치,시청각교육장치,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 및 동전작동식 기계장치,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철도수송용 안전기구,카메라 및 모니터용 마운트(고정) 장치,

[Class 11] 치과용 오븐[덴탈오븐(dental oven)],일회용 살균봉투,가스그릴,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가정용 식기소독기,가정용 정수기,로스터용 꼬치,바비큐용구,요리용 링,요리용 변철 장치,요리용 석쇠장치,음료수 여과필터,토스터{비전기식},회전식 고기굽는기구,가정용 얼음냉장고{전기식은 제외},가정용 얼음통{휴대용은 제외},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얼음냉장고,가스레인지,가스레인지 가방,가스버너,가스버너용 선반받이,가스콕,가정용 가스오븐,가정용 석유풀로,가정용 제빵용 오븐,공업용 조리오븐,과일로스터,내화점토제 오븐부속품,로스터,로스터회전기,맥아용 로스터,바비큐 그릴용 용암석,백열버너,버너{실험실용은 제외},빵굽는 기계,산수소(酸水素)버너,산업용 전자레인지,살균용 버너,석유버너,석유풀로,아교가열장치,아세틸렌버너,알콜버너,열풍식 오븐,오븐,오븐용 구조판,오븐용 금속제 구조물,오븐용 성형부속품,오일버너,점시대우는 기구,제빵용 오븐,주방용 오븐레인지,캠핑용 버너,커피로스터,토제풍로,풍로,훈육기,휘발유버너,가스대,싱크대,조리대,주방용 싱크대,발광성 가옥번호판,발열팩,탕파(湯婆),휴대용 난로,수족관용 여과장치,수족관용 히터,대소변용 스퍼드,변기,변좌,비데(bidet),세척수 분사기 장착식 변기장치,소변기,수세식 변소용 소독제 디스펜서,위생설비용 소변기,화

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가열다리미용 히터,비전기식 족온기,샤우나 욕조설비,샤워기,샤워스탠드,샤워실,샤워욕조,샤워플랫폼,세면기{위생설비의 부품},세면대,손샤워기,열기욕조용 부속품,온천욕용 욕조,욕조,욕조라이닝,욕조배관고정구,욕조설비,욕조용 부속품,이발소용 세면대,조립목욕실,좌욕용 욕조,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일광욕 침대,가스난로,가스스토브,가정 실내난방용 가스스토브,가정 실내난방용 석유스토브,가정 실내난방용 석탄스토브,가정용 난로,공기재열기(再熱器),난로,난로{전기난로는 제외},난방용 뎀퍼,난방용 라디에이터,난방용 스토브,난방팬(Warming pans),라디에이터 캡,석유스토브,석탄스토브,스토브,온기로,욕조용 히터,전기식 가열필라멘트,전기식 난방장치,전기식 라디에이터,중앙난방설비용 팽창탱크,중앙난방용 라디에이터,화로,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가정용 가스온수기,가정용 보일러,가정용 전기식 방사히터,고체/액체/기체연료용 난방장치,공업용 온기난방기구,공업용 온수난방기구,공업용 증기난방기구,난방보일러용 급수장치,난방보일러용 송기관(送氣管),난방보일러용 파이프,난방설비,난방설비용 보일러관,난방용 발열체,난방용 보일러,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난방장치,물가열기,보일러{기계부품은 제외},비수송기계기구용 스토커(석탄 공급장치),세탁실용 보일러,순간온수기,열펌프,온기난방기구,온도자동조절장치용 밸브{난방설비의 부품},온수기,온수난방기구,온수난방설비,온풍장치,전기보일러,중앙난방방열기용 가습기,증기난방기구,증기난방설비용 공기밸브,증기발생설비,증기보일러{기계부품은 제외},증기축압기,축열기,축열식 열교환기,태양열온수기,투입히터,가스냉장고,공기냉각장치,공업용 국소유도식 에어컨디셔너,공업용 에어컨디셔닝장치,공업용 중앙 에어컨디셔닝 설비,공업용 창문 거치형 에어컨디셔너,냉각기,냉각기기 및 설비,냉각동,냉각설비 및 기계,냉각용 장치 및 설비,냉각장치 및 기계,냉각증발기,냉각탑,냉각통,냉동기,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냉장실,냉장용기,냉장캐비닛,룸쿨러,물냉각설비,액체용 냉각설비,에어컨디셔너,에어컨디셔너용 여과기,에어컨디셔닝설비,에어컨디셔닝장치,에어컨디션용 팬,에어컨디션장치용 팬,용광로용 냉각기,진열용 냉장캐비닛,가정용 레인지후드[배기후드],굴뚝용 송풍기,실험실용 환기후드,주방용 환기후드,환기[공기조절]장치 및 설비,환기후드,환풍기,환풍기용 팬,환풍장치 및 설비,가스등,가스맨틀,등불,램프,램프갓,램프갓 지지구,램프등피,램프용 반사경,램프용 버너,램프용 유리기구,비전기식 조명기기,사기등잔,용접용 램프,유등(油燈),초롱,컬링램프,호롱,햇불,수도꼭지용 좌금[와셔],가정용 오수정화조,굴뚝연관,급수설비,급수전,도수관설비,배수설비,분수장치,삼조식 분뇨탱크,석유공업용 화염도관,석유정제장치용 화염도관,세류관개용 급수기,수도관용 혼합 탭,수도꼭지,수세식 세정설비,수세식 탱크,압력수조(水槽),위생설비용 도관,위생설비용 수도관,위생장치 및 설비,음용 분수,인분처리설비장치,장식용 분수,태양열집열판,파이프용 마개,수세식 변소,이동식 간이화장실,실험실용 가열기기,실험실용 램프,실험실용 버너,이화학기구용 가열판,이화학기구용 열판,화학기계기구용 열판,선박용 냉난방장치,선박용 라이트,선박용 반사경,선박용 방향표시등,선박용 방향표시전구,선박용 방현(防眩)장치,선박용 서리제거장치,선박용 에어컨디셔너,선박용 조명기기,선박용 헤드라이트,선박용 환기설비,선박용 히터,항공기용 냉난방장치,항공기용 라이트,항공기용 반사경,항공기용 방향표시등,항공기용 방향표시전구,항공기용 방현(防眩)장치,항공기용 서리제거장치,항공기용 에어컨디셔너,항공기용 조명기기,항공기용 조명설비,항공기용 헤드라이트,항공기용 환기설비,항공기용 히터,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철도차량용 라이트,철도차량용 반사경,철도차량용 방향표시등,철도차량용 방현(防眩)장치,철도차량용 보일러{엔진보일러는 제외},철도차량용 서리제거장치,철도차량용 스토커,철도차량용 에어컨디셔너,철도차량용 조명기기,철도차량용 헤드라이트,철도차량용 환기설비,철도차량용 히터,오토바이용 라이트,자동차용 냉난방장치,자동차용 라이트,자동차용 반사경,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방향표시전구,자동차용 방현(防眩)장치,자동차용 서리제거장치,자동차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조명기기,자동차용 헤드라이트,자동차용 환기설비,자동차용 히터,자전거용 라이트,자전거용 램프,자전거용 조명기기,농업용 건조장치,농업용 살수기(撒水機),농업용 살수장치,사료건조장치,가스발생설비,가스세정기,가스응축기,가스정화장치,가정용 공기정화기,가정용 물이온화장치,가정용 전기식 목욕수 정화장치,건조장치,건조장치 및 설비,공기건조기,공기건조장치,공기살균기,공기여과설비,공기정화장치,공기정화장치 및 기계,공기처리용 이온화장치,공기탈취장치,공업용 공기정화기,공업용 물정화장치,공업용 색층분석장치,공업용 식기소독장치,공업용 제습기,공업용 증기과열기(過熱機),담수화설비,무균장치,물살균소독장치,물여과장치,물연화장치,물연화장치 및 설비,물정화설비,물정화장치,물정화장치 및 기계,비의료용 훈증소독장치,비인체용 방취장치,살균기,소독장치,수돗물 정화장치,수영장용 염소살균장치,아세틸렌 제조기,아세틸렌발생기,열교환기,오일정제장치,음료수여과기,정수장치,중합(重疊)설비,증류기,증류용 정화탑,증류장치,증류탑,증발장치,증자기,청정실,취수장치,하수용 정화설비,화학기계기구용 건조장치,화학처리용 열교환기,화학처리용 증류기,화학처리용 증발장치,우유냉각설비,우유살균기,유기식품 탈수장치,음료냉각장치,제빙기,제빙장치 및 기계,제빙장치 및 설비,파스퇴르살균기,가마,가마용 부속품,가정용 쓰레기 소각로,건유로,공업용 가스 발생로,공업용 가열로,공업용 균열로(均熱爐),공업용 노(爐),공업용 도가니,공업용 석회가마,공업용 쓰레기 소각로,공업용 열풍로,공업용 용융로,공업용 전기로,공업용 탄화로,공업용 회전식 가마,노(爐),노(爐)용 불격자,노(爐)용 성형부속품,노(爐)용 재받이통,도구야금로,반사로,비실형실용 노(爐),소각로,소결로,소둔로,쓰레기 소각로,용광로,용광로용 투입장치,용선로,원자로,이동식 금속가열로,재운반용 자동설비,전기로,전로,코크스로,태양로,평로,핵연료 및 핵반응감속재의 처리용 설비,혼철로,회전로,담배 로스터(roaster),담배용 냉각장치,가로등,강내안전등,공기정화용 살균램프,광부용 램프,네온등,랜턴,발전등,방전등용 기구,백열전구,백열전등기구,비의료용 자외선램프,살균등,상들리에,소형전구,쇼케이스용 조명장치,수상등,수은등,수족관용 전등,스포츠라이트,아세틸렌 조명기,아크등,아크등용 탄소,안전램프,야외용 램프,영사기용 램프,오버헤드램프,잠수용 조명기구,장식등,적외선전구,전구,전구용 필라멘트,전기식 회중전등,전기조명기구,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전등용 소켓,조명용 랜턴,조명용 마그네슘필라멘트,조명용 발광관,조명용 방전관,조명용 산광기(散光器),조명용 전기식 방전관,조명장치 및 설비,조명전등,집어등,천정등,축제장식용 장식등,크리스마스트리용 전등,탁상스탠드램프,탐조등,태양등,투광등,형광등,형광등용 관,회중전등,가습기(加濕器),가습기(加濕器){가정용/전기식},가정용 전기냉동기,가정용 전기냉방장치,가정용 전기냉장고,가정용 전기담요{비의료용},가정용 전기식 냄비,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가정용 전기식 의류건조장치,가정용 전기식 정수기,가정용 전기식 주전자,가정용 전기식 커피제조기,가정용 전기토스터,가정용 전기풍로,가정용 전기화로,가정용 전자기 유도식 조리기,가정용 제습기{전기식},개인용 전기식 선풍기,개인용 전기족온기,냉장고,모발건조기(頭髮乾燥機),비의료용 전기담요,비의료용 전기방석,비의료용 전열식 쿠션[패드],선풍기,세면실용 손건조장치,세탁용 구리가마,안면용 증기발생기,요리용 전자렌지,전기냉장고,전기냉장쇼케이스,전기레인지,전기스토브,전기식 보온용 발싸개,전기식 세탁물건조기,전기식 압력소스냄비,전기식 압력솥,전기식 와플 굽는 틀,전기식 요구르트제조기,전기식 요리용구,전기식 우유병 가열기,전기식 주전자,전기식 커피기계,전기식 커피여과기,전기식 커피퍼컬레이터(Percolators),전기식 프라이팬,전기연탄가스배출기,전기이불,전기족온기,전기커피포트,전기쿠커,전기탈수기,전기토스터,전기풍로,전열식 카펫,전자레인지,침대보온기,침대보온기{비의료용/전기식},가스점화기,가스점화기{흡연용은 제외},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점화기{흡연용은

제외},가정용 얼음냉장고,수송기계기구 유리창서리제거용 가열장치,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조명부품},수송기계기구용 서리제거장치,수송기계기구용 에어컨디셔너,수송기계기구용 환기(공기조절)설비,수송기계기구용 히터,수송기계기구용 라이트,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수송기계기구용 방향표시전구,수송기계기구용 조명장치,수송기계기구용 헤드라이트,요리용 기구 및 설비,요리용구(Cookers),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종류/난방/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 Reproduction of the mark:

VALGA

* Goods/services of the applied-for mark in relation to this ground:

[Class 20] Office furniture; desks; tea tables; mattresses; sofas; book shelves; rocking chairs; chairs [seats]; works of art made of bamboo; tables.

☐ Information concerning the earlier mark (2)

- Filing number : 4020100023300

- Filing date : 30/04/2010

- Korean registration number : 4008935520000

- Korean registration date : 08/12/2011

-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 SAEHAN TUNGSTEN CO., LTD.

9, Geumgang-ro 1845beon-gil, Jinjeop-eup, Namy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Goods/services :

[Class 09] 유전자 칩(chips),투약용 디스펜서(dispenser),DNA 칩,광학유리,굴곡유리,비건축용 가공 광학유리,비건축용 가공 굴곡유리,비건축용 가공 렌즈유리,비건축용 가공 자외선 투과유리,비건축용 가공 적외선흡수유리,비건축용 가공유리,전도체피복유리,계산자(尺),주판,방호용 신발,사고/방사선조사(照射)/화재용 보호신발,전기자물쇠,곡척(曲尺),목수용 자(尺),목수용 접는자,부척(副尺),턱춘목,가스분석기구,감압챔버,계량대,공기분석장치,과학용 증류장치,레토르트,레토르트 받침대,모세관,모형,베타트론,뷰렛,산소온반장치,삼각석쇠,세균배양기,시험관,식품분석장치,실험기구용 발효장치,실험실용 노(爐),실험실용 도가니,실험실용 이화학기기,실험실용 자동이온교환 색층분석장치,실험실용 쟁반,실험실용 증류기,실험실용 특수비품,실험실용 회분접시,실험용 도자기제기구,실험용 색층분석장치,실험용 유리기구,에어가스발생기,연소순가락,이화학장치 및기구,이화학장치용 격막,입자가속기,자동색층분석장치,자석교반기,표본,피펫(Pipettes),항습기,항온기,화학기기(실험용),검사작업용 거울,광반사막,광학거울,광학기계기구용 반사경,광학기구용 미동축정나사,광학기기{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광학렌즈,광학식환등기,광학용 대물렌즈,광학용 보정렌즈,광학용 아퍼토미터,광학용 프리즘,광학용 확대경,광학제품,굴절망원경,금속류현미경,마이크로톰(Microtomes),망원경,망원경 체관[렌즈원통],망원경용 반사경,망원경용 삼각대,망원경용 자동시준의(儀),망원경용 프리즘,망원조준기,문에장치하는 키폭(Peephholes),분광기,비디오스크린,비디오영사기,사냥용 쌍안경,생물현미경,성좌 투영기(星座投影機),스파이글라스(작은 망원경),실물환등기,쌍안경,영사기,영사스크린,영화 촬영용 반사경,영화기기,영화용 기계기구,영화용 녹음기계기구,영화용 영사기,영화촬영용 카메라,영화편집용 영사기,영화필름 영사스크

린,영화필름용 편집기,영화필름용 편집기구,오목거울,입체 현미경을 포함한 현미경,입체경,입체경장치,잠망경,접안렌즈,접안렌즈를 포함한 기구,중현미경,집광기(集光器),차광기,천체망원경,천체측정용 분광사진장치,투광기,편광현미경,프리즘,플라네타륨,현미경,현미경 받침대,현미경 집광장치,현미경검사용 해부용기구 전용용기,현미경검사용 회절장치(回折裝置),현미경슬라이드용 용기,현미경용 체관 [렌즈원통],현미경용 프리즘,형광스크린,화기용 조준망원경,화면 영사기,확대경,환등기,감광판을 사용하는 카메라,광셔터,노출계,다목적 카메라,다중프레임 뷰카메라,디지털 카메라,렌즈셔터,렌즈후드,분광사진장치,비디오레코더가 장착된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비디오카메라,비디오카메라[캠코더],사진감광판용 가대,사진기계기구용 거리계,사진기계기구용 매거진,사진기계기구용 셀프타이머,사진기계기구용 주름상자,사진기구용 노출계,사진기구용 케이스,사진기기,사진기용 셔터,사진기용 셔터릴리즈,사진기용 조리개,사진슬라이드용 위치조정장치,사진슬라이드용 프레임,사진암실,사진암실용 램프,사진용 건조대,사진용 노출계,사진용 트레이너,사진용 선반,사진용 섬광전구,사진용 세척쟁반,사진용 속도 측정장치,사진용 스크린,사진용 스플,사진용 슬라이드,사진용 앵글파인더,사진용 자외선필터,사진용 카메라,사진용 파인더,사진용 플래쉬라이트,사진용 플래쉬라이트장치,사진용 필터,사진용 확대장치,사진용기기 전용용기,사진용품용 스플,사진인화용 건조장치,사진장치용 받침대,사진제판용 스크린,사진현상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선형이미지센서가 부착된 카메라,슬라이드 또는 사진 영사장치,슬라이드 플레이밍장치,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슬라이드영사기,인화용 광택기구,자동초점식 영사기,자동현상필름식 동영상카메라,자동현상필름카메라,적외선 카메라,천체사진용 렌즈,카메라,카메라 렌즈 어댑터링,카메라 렌즈후드,카메라 및 사진기구용 가방,카메라 클로우저[마개],카메라용 라이트장치,카메라용 렌즈필터,카메라용 뷰파인더,카메라용 삼각대,카메라용 셔터,카메라용 셔터릴리즈,카메라용 조리개,카메라용 릴딩헤드,카메라용 플래시건,카메라케이스,카메라후드,태양사진장치,텔레비전카메라,플래시건,필름용 카메라,필름절단장치,TV카메라,가속도계,가속센서,가솔린계기,가스계량기,가스미터,가스시험기구,각도게이지,각도기,간섭계,거리기록장치,거리측량기,거리측정기,게이지,경도시험기,경사계,경위의(經緯儀),계량기,계량기기,계수기,고도계(高度計),고무시험기,고온계,고음계(高音計),공기조절기용 측정 및 제어장치,공업용 또는 군사용 금속탐지기,공진기,과학용 탐침,관측기구,광도계(光度計),광량계(光量計),광속계,구경측정용 링,구면계(球面計),구조시험기,굴절도계(屈折度計),권척(卷尺),균형시험기,금속강도시험기,금속경도시험기,금속압축시험기,금속재료시험기,기본단위계량기기,기상관측용 기구(氣球),기상관측용 제기계 자침,기상관측용구,기압계,기체측량계,길이게이지,길이측정기구,나사측정기계기구,나사태핑용 게이지,나침반,내후검사기,농도계,노비중계,눈금측정장치,당도계,대들보(Cross beam) 깊이 측정기,대저울[수평저울],동력계,동력측정계,되,디젤유 방출시험기,로그(Logs),마이크로미터,마이크로미터계기,말(계량기),면적계,목재시험기,미소경도시험기(微小硬度試驗機),밀도계,바리오미터(Variometers),방위측정기,방향지시나침판,밸브압력지시계용 플러그,보수계(步數計),분량계,불쾌지수계,불투명도 측정기,브레이크액 검사장치,비교측정기,비의료용 시험장치,비의료용 온도계,비의료용 진단기구,비중계,비틀림시험기,비행시험장비,사진측정기,산(酸)용 비중계,색채계(色彩計),섬유재료시험기,소음계(騒音計),소음레벨측정기,속도계,속도계 시험기,수량미터,수액탐지봉,수송기계기구용 속도검사장치,수송기계기구용 온도조절장치,수송기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수송기계기구용 타이어의 저압자동표시기,수심 측정기,수심측정장치 및 기계,수위계,수은수준기,수준계,수준기(水準器),수준의,수준표척,수평저울[대저울],슬라이드캘리퍼스,습도계,습도자동조절기계기구,시멘트시험기,실계수기,야황산정량계,알콜분계량기,압력계,압력기록계,압력센서,압력자동조절기계기구,압력지시계,압력측정

장치, 압축시험기, 액면계, 액면자동조절기계기구, 액체비중계, 액체수준센서, 액체자동조절
 기계기구, 알리데이드(Alidades), 약량계(藥量計), 양장점용 자, 에그타이머(egg timers),
 연성시험기, 연추선, 연추선의 추, 열량계, 열량자동조절기계기구, 염분계, 오염감지기, 오일
 수준센서, 온도센서, 온도조절장치, 온도지시기, 우량계, 우편요금미터, 유도단위계량기기, 유
 량계, 유리눈금식 저울, 유즙비중계, 육분의, 인공기상장치, 인장시험기, 일조계, 자기콤파스,
 자동고도계, 자동액체수위제어기계기구, 자동액체유동제어기계기구, 자동액체합성제어기
 계기구, 자동연소조절기계기구, 자동온도조절기, 자동조절기기, 자오의, 자이로미터, 자이로
 자기콤파스, 자이로콤파스, 자전거 속도계, 재료시험용 기구 및 기계, 재료실험기기, 저울,
 저울추, 전기식 측정장치, 전선의 직경측정장치, 전자기계식 진동계, 전지용 산(酸)정량계,
 점도계(粘度計), 정밀 경위의(經緯儀), 정밀저울, 정밀측정기기, 정밀측정장치, 조도계(照度
 計), 좌표측정계, 주차미터기, 지그(Jigs), 지뢰매설물탐지기, 지중온도계, 지진계, 진공자동조
 절기계기구, 진공측정기, 진동계, 천정의(天頂儀), 천체의, 천체측정기계기구, 측상간격 시험
 기, 충격시험기, 충전량 감지기, 측량기구, 측량기구용 삼각대, 측량기기, 측량용 기계기구,
 측량용 나침반, 측량용 수준기, 측량용 유리기구, 측량용 자기콤파스, 측량용 줄, 측량용
 타깃, 측량용 표척, 측력계, 측연(測鉛), 측연선(測鉛線), 측정기구, 측정용 손가락, 측정용
 자, 측정용 테이프, 측정의, 측정장치, 측한[측봉], 치마단용 표지, 캘리퍼스, 콘크리트시험
 기, 콤파스, 타이머, 타이어 압력 측정기, 타코미터(Tachometers), 택시미터(Taximeters),
 투명도측정기, 트란싯, 파생단위측정기계기구, 팔분의, 편광계, 편지저울, 평면도측정기계기
 구, 평판{측량기구}, 평형장치, 표면거칠기측정기, 표척{측량기구}, 풍속계, 풍향계, 프로그램
 조절기계기구, 플라스틱시험기, 피부두께측정기, 피혁두께측정기구, 한란계, 항해기기, 항해
 용 콤파스, 회전계, 회전수계수기, 회전의(回轉儀), 극장용 안경, 금속제 및 합성물질제 안
 경테, 단안경용 테, 독서용 안경, 미장착된 안경테, 방진안경, 방현(防眩)안경, 보안용 책, 보
 정용 안경, 보통안경, 보호안경, 보호용 점안경, 선글라스, 선글라스용 렌즈, 손잡이안경, 수
 중안경, 스노우 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안경,
 안경 및 선글라스용 케이스, 안경알, 안경용 줄, 안경용 측면보호대, 안경용 코드, 안경
 줄, 안경집, 안경테, 안경테 및 선글라스테, 안경테 및 코안경테, 안경홀더, 어린이용 안경,
 얼음안경, 오페라 글라스, 외알안경, 잠수용 고글, 차광안경, 코안경, 코안경용 줄, 코안경
 줄, 코안경집, 코안경테,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세척기, 콘택트렌즈용 용기, 편광안경, 필드
 용 안경, 가산기(加算器), 계산기, 계산기 작동식 기계장치, 계산기구, 계산용 원반, 금전등
 록기, 동전계수 및 선별기계, 사무용 펀치카드기계, 사진복사기, 송장(送狀)작성기계, 수동
 계산기, 시간기록기계, 시간기록장치, 우표첨부확인장치, 위조동전검출기, 자동금전등록기,
 자동현금인출기[ATM], 작업기록기, 전기계산기, 청사진장치, 총액계산기, 크레딧카드기
 계, 크로노그래프[시간기록장치], 타임레코더,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 및 날짜스탬프, 표
 수(票數)계산기, 현금교환기, 현금자동분류집계기, 화폐계수 및 선별기계, 화폐계수기, 회
 계기, 가솔린스테이션용 장치, 연료펌프용 자동조절장치, 유류주입기, 주유기기, 주유소용
 가솔린펌프, 주유소용 연료분배펌프, 주유소용 장치, 개인용 사고대비장구, 구명망(求命
 網), 구명벨트, 구명부표, 구명용 슈트, 구명장치, 구명재킷, 날개꼴 부낭, 방탄조끼, 사고대비
 용 보호망, 수영벨트, 수영용 또는 목욕용 부낭, 수영재킷, 안전망, 안전방수포, 안전벨트, 응
 급처치 교육용 마네킹, 자동발신기, 작업용 무릎보호대, 조난신호기, 산불진화용 안전기
 구, 소방용 석면제 방호물, 소화기, 소화기기, 소화용(消火用) 두들기는 기구, 소화용(消火
 用) 모포, 소화용(消火用) 스프링클러장치, 소화전(消火栓), 소화탄, 소화호스용 노즐, 자동
 소화장치, 자동차용 소화기, 화재 피난장치, 가스누출경보기, 경보기, 경보기기, 경보용
 벨, 도난경보기, 도난경보기{차량용은 제외}, 도난방지용 경보장치, 불꽃감지기, 사이렌, 연
 기감지기, 연기탐지기, 열감지기, 음향경보기, 인화성 가스 검출용 경보기, 전기 및 전자식
 도난경보기, 전기식 경보벨, 전기식 도난방지장치, 화재경보기, 경적, 교통사고방지용 착

용반사판,교통신호등,기계식 교통신호기,기계식 표지,반사판,발광식 교통신호기,발광식 또는 기계식 교통신호기,발광식 또는 기계식 교통신호판,발광식 또는 기계식 도로표지,발광식 또는 기계식 신호기,발광식 또는 기계식 안전신호판,발광식 또는 기계식 안전표시판,발광식 또는 기계식 표지판,발광식 표지,발광식 항로표지,부자,비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섬광식 신호,식별용 부표{발광식},신호용 랜턴,신호용 벨,신호용 부표{발광식},신호용 회전등,점멸신호등,차량고장경고용 램프,차량고장경고용 발광식 삼각표지,차량고장경고용 삼각표지,철도용 신호기,해상용 신호장치{발광식 또는 기계식},수영용 귀마개,수영용 안면마스크,스쿠버다이빙용 공기탱크,잠수마스크,잠수용 귀마개,잠수용 산소통,잠수용 호흡장치,잠수용장치,호흡장치{인공호흡용은 제외},자동차 회전막대 출입구,전기식 문 개폐장치,전기식 문닫힘장치,전기식 문열림장치,주차장용 동전작동식 게이트,리프트조작장치,엘리베이터조작장치,구멍뚫목,구멍보트,소방정,과학용 인공위성,인공위성,소방자동차,소방차,자동차용 여송연라이터,아크용접기,전기아크 절단장치,전기아크식 용접인두,전기아크용접장치,전기용접장치,가축사육용 전기 울타리,검란기(檢卵器),아연도금장치,오존발생기,이온화장치{공기처리용은 제외},전기도금장치,전해조,전기식 포장용 플라스틱씰 장치,가감저항기,감쇠기,계전기,계전기 및 변압기,고주파 교환 전원공급장치,단권(單捲) 변압기,단로기,동력제어기,리액터,무대조명조절용장치,배선함,배전기기,배전반,배전제어판,배전판,배전함,벨용 푸쉬버튼,분기함,분배변압기,불꽃방지구,셀스위치,솔레노이드 밸브[전자기적스위치],수송기계기구용 전압조정기,원형 플러그 커넥터,유도자,유도전압조정기,자동배전기,자동배전반,자동타임스위치,전기 리듀서,전기단자,전기배전용 블록,전기배전함,전기변압기,전기변압기기,전기스위치,전기식 조광기(調光器),전기식 조절장치,전기용 인버터,전기용 제어판,전기자,전기저항기,전기전환기,전기접속구,전기접점,전기제어기기,전기제어장치,전기제어판,전기조명기구용 형광등 안정기,전기커넥터,전기커패시터[축전기],전기컨넥터,전기통신기구용 퓨즈,전기퓨즈,전류변환기,전류스위치,전류제어기,전류제한기,전선용 스플라이스,전선용 접속구,전선용 접속기,전선용 커넥터,전압급승압 방지기,전압모니터용 모듈,전압안정 전원공급장치,전압안정장치,전압조정기,전원스위치,전지충전기,점멸기(點滅器),접속함,정류기,정류기 모듈,정류용 전기장치,정류자,제어판,조도조절장치,조명기구안정기,조상기,증폭용 전기변압기,차단기,차동스위치,축전기[콘덴서],축전지충전기,충전장치,퓨즈,퓨즈선,플러그 커넥터,피뢰기,피뢰침,피뢰침[봉],합금제 퓨즈선,혼선방지장치,회로차단기,회전변류기,네온사인,스포츠라이트설치용 대전(帶電)레일,갈바니전지,건전지,고압전지,광전지,니켈 카드뮴 축전지,수송기계기구용 축전지,습전지,양극전지,연료전지,이동전화기용 전지,전지,전지용 그리드,전지케이스,점등용 전지,점화용 전지,축전지,축전지상자,축전지용 극판,축전지조,태양전지,회중전등용 전지,검류계,공중선측정기,광주파수 계측장치,발전기,오실로그래프,용량측정기,위상계,자기측정기,자기측정기기,저항계,저항측정기,적산전력계,전기손실지시계,전기용 지시계,전기자기측정용 검출기,전기측정기기,전력계,전류계,전압계,전파측정기,전파측정기기,주파수계,진공관특성측정기,회로계,고전력 빔 전송용 도파관,고전류용 안테나케이블,광섬유,광섬유 접속슬리브,광섬유 케이블,광신호 전송용 케이블,광전도 필라멘트,광케이블,나선(裸線),동력케이블,라디오중계용 케이블,미네랄 절연 전기케이블,비선형 광섬유,송전선용 재료,와인딩 와이어(감는 전선),유선텔레비전 송수신용 케이블,음향 및 영상 전송용 전선 및 섬유,자기선,자기식 전화선,자동차시동장치용 케이블,저항선,전기도관,전기도체,전기동축케이블,전기신호 또는 광신호 전송용 케이블,전기신호 및 광신호 전송장치용 케이블,전기케이블,전기케이블용 덕트,전기케이블용 시스,전기케이블용 접속슬리브,전선,전선 및 케이블,전선관,전선식별용 섬유(纖維),전선용 시스,전신선,전자용 케이블,전화선,절연동선,점프스타트용 케이블,접속용 슬리

브,접속용 전기케이블,접속케이블,접속함(接續函),종단함,통신케이블,플러그인 커넥터,피복전선,필터 일체형 전기동축케이블,확장케이블,유인살충용 전기장치,전기 버저,전기가열식 헤어컬기,전기다리미,전기모기채취기,전기식 도어벨,전기식 헤어컬기,전기식 화장제거기구,전기인두,전열식 양말,공(空)비디오테이프,공(空)오디오테이프,구술(口述)녹음기,녹음기,녹음기 또는 VTR 헤드청소용 테이프,녹음기계기구,녹음디스크,녹음매체,녹음재생기구,녹음테이프,단거리용 라디오,동전작동식 자동음악연주장치,디지털 콤팩트디스크용 레코드플레이어,라디오,라디오 혼선차단용 필터,라디오수신기,레코드덱,레코드원반,레코드청소장치,레코드플레이어,멀티플라이어,메가폰,무선라디오통신장치,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비디오레코더,비디오카세트,비디오카세트레코더,비디오테이프,비디오테이프레코더,사운드믹서기,수송기계기구용 라디오,스테레오,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오디오 및 비디오용 미처리 콤팩트디스크,오디오 및 비디오용 콤팩트디스크,오디오비디오수신기,오디오테이프 레코더,위성수신기,음성 기록 및 재생용 장치,음악용 주크박스,음향 또는 영상의 전송/재생용 장치,음향 및 비디오의 기록 및 재생기구,음향 및 신호재생용 라디오수신기 및 모니터,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음향 증폭기,음향/영상매체용 기록 및 재생장치,음향녹음장치,음향도관,음향송신장치,음향재생장치,음향커플러,자기식 테이프레코더,자동차용 방송튜너,자동차용 텔레비전,전기음향 트랜스듀서,전기음향영상기기,전기축음기,증폭용 확성기,진동판,진폭제한기,차량용 비디오레코더,차량용 카세트플레이어,천 재질의 라디오장치용 음향필터,축음기,카세트레코더,카세트플레이어,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테이프레코더용 공(空)자기테이프,텔레비전 모니터,텔레비전수신기,텔레비전 위성방송수신기,텔레비전용 디코더,텔레비전장치,토크머신,통합증폭기가 내장된 사운드 믹서기,파워증폭기,헤드폰,확성기,확성기계기구,확성기용 나팔,확성기캐비닛,확성시스템(PA시스템),휴대용 라디오,CD플레이어,DVD 플레이어,MP3 플레이어,검파기,검파기용 인터페이스,고속전기모터용 전자식 주파수변환기,고정국다중통신기계기구,고정국단일통신기계기구,고정국용 단일채널 무선통신기기,고주파장치,공업용 원격제어전기설비,공중전화기,나선방송기계기구,녹음디스크청소장치,다이얼,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용 중계기,라디오 및 텔레비전 안테나,라디오송신기,라디오프로그램 및 라디오중계메시지 송신장치,레이더기계기구,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마이크로폰,모뎀,무선안테나용 지주(支柱),무선전신기,무선전화기,무선전화기용 단말기,무선통신용 안테나,반송중계기계기구,방송용 비디오카메라,방연광 광석 검파기,방향탐지기,배전반표시등,변성기(變成器),보안기,비디오 멀티플렉서(다중송화기),비디오 송신장치,비디오폰,비상신호 송신기,사진전송기,상호통신장치,선박용 통신기계기구,수동교환기,수동전신기,수송기계기구용 항법장치,수화기용 소독기,신호의 원격제어용 전기역학장치,안테나,안테나 필터,액추에이터용 주파수 변환기,어댑터,영상음향(AV)수신기,워키토키,원격전기점화장치,원격제어장치,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원격파괴장치,위성안테나,위성이용항법장치,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음향전송기구용 개인용 헤드폰,음향정보의 무선전송장치,이동전화기,이동전화기용 케이스,이동전화기용 키보드,이동전화기용 핸드프리장치,이어폰,인공위성 통신용 위성접시,인공위성항행위치 및 지구위치결정장치,인쇄전신기,인터콤,인터폰,자기테이프 클리너,자기헤드 클리너,자동교환기,자동응답기,자동전신기,자동전화교환기,자동차용 안테나,전기어댑터,전기코일,전기코일용 홀더,전기통신기기,전기통신용 송신기,전기통신용 송신장치,전력선반송기계기구,전신장치,전자기코일,전화기,전화기용 커넥터,전화기용 케이스,전화기용 핸드프리키트,전화기용 헤드셋,전화녹음기,전화단말기,전화송화기,전화수화기,전화자동응답기,전화자동응답장치,전화장치,전화기,주파수 변환기,중계교환기,증폭기(앰프),증폭기가 장착된 레이더수신기,차량용 안테나,차량용 통신기계기구,철도전철기(轉轍器)의 원격제

어용 전기역학장치,초킹코일,케이블반송기계기구,텔레비전 송신기,텔레비전용 프롬프터,텔레타이프라이터,텔레프린터,통신기구용 전기레지스터,통신기구용 전기커패시터,통신용 교환기,통신용 송신기,통신용 송신장치,통신장치용 마이크로폰,통화관,팩시밀리,팩시밀리 송수신장치,팩시밀리 통신장치,팩시밀리시스템 장착용 이동전화기,페이저,포물선형 안테나,픽업,항공기용 통신기계기구,항공용 라디오통신기기,항법기구,해상경비용 레이더,호출기,휴대용 전화기,휴대용 통신기계기구,휴대폰,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가이거계산기,감열식 프린터,개인용 컴퓨터,공업용 방사선장치,공업용 방사선투시스크린,광디스크,광디스크 판독기,광디스크드라이브,광스캐너,광자기펜,광전관(光電管),광학데이터매체,광학문자 인식용 소프트웨어,광학식 문자판독장치[OCR],광학식 판독기,기록된 게임용 컴퓨터프로그램,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노트북컴퓨터,다기능 키보드,데이터처리장치,데이터처리장치용 프린트회로 형태의 인터페이스카드,디스켓 및 콤팩트디스크용 케이스,디스크메모리,디지털 디스크 드라이브,디지털 신호 처리장치,디지털 입출력 스캐너,디지털 컬러복사기,디지털 컬러프린터,라디오용 열전자관,랩탑컴퓨터,레이저측정장치,레이저프린터,마더보드[메인보드],마우스,마우스패드,마이크로칩카드,마이크로컴퓨터,마이크로프로세서,메모리 확장모듈,메모리판,무선콘텐츠 전송용 컴퓨터소프트웨어,문서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바코드스캐너,바코드판독기,발광식 전자포인터,발광식 포인터,방사선 치료분야의 선량측정용 소프트웨어,브라운관,비디오 모니터,비디오게임카트리지,비의료용 레이저,비의료용 X-선관,비의료용 X-선발생장치 및 시설,비의료용 X-선방호장치,비의료용 X-선사진,비의료용 X-선장치,비조명용 방전관,비조명용 전기식 방전관,비행시뮬레이터,사이클로트론,상품용 전자꼬리표,수송기계기구조종 및 제어용 시뮬레이터,수중청음기계기구,스캐너,신용조회용 소프트웨어,암호화용 컴퓨터소프트웨어,열전자램프 및 열전자관,영상/그래픽/텍스트 처리용 소프트웨어,영상/음향/비디오용 컴퓨터프로그램,오디오장치의 음질제어 및 향상용 소프트웨어,외부스크린 또는 모니터에 사용적합한 게임장치,외부스크린 또는 모니터에 사용적합한 오락장치,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장치,워크스테이션,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음파탐지기,음향측심기,음향탐지기구,이동전화기 사진전송용 컴퓨터소프트웨어,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이미지처리용 전자카드,인코딩된 신원확인용 자석팔찌,잉크젯 프린터,자기(磁氣)기록매체,자기(磁氣)데이터매체,자기디스크,자기디스크용 실드케이스(차단케이스),자기식 물체탐지기,자기식(磁氣式) 인코더,자기탐광기,자기탐지기,자기테이프,자기테이프용 자기제거장치,자동서비스단말기 제어용 컴퓨터소프트웨어,자동차 운전 연습용 시뮬레이터,자동표면제어식 스캐너,전광게시판,전기식 모니터장치,전열블랭킷,전자 트랜지스터,전자거래용 보안단말기,전자게시판,전자관,전자금전등록기용 컴퓨터프로그램,전자다이어리용 케이스,전자도난방지,전자메모리,전자메일 보안용 소프트웨어,전자복사기,전자수첩,전자식 경고벨,전자식 문달힘 시스템,전자식 조립카드,전자식 코드화장치,전자식 표시판,전자신호송신기,전자응용자동문개폐장치,전자자동판매기,전자지불단말기,전자총,전자카드리더기,전자컴퓨터,전자타이머,전자타자기,전자펜,전자표시판,전자현미경,전자회로학습기,접속허용 또는 진입제어용 컴퓨터프로그램,정류관(整流管),정전식 복사기,중앙경보장치,중앙처리장치[프로세서],증폭용 전자관,지진탐광기계기구,진공관,집광발전검용기,집적회로가 내장된 카드,초음파살충기,초음파응용측심기,초음파응용탐상기,초음파응용탐지기,칩카드,칩카드 리더기,카드판독장치,커플러,컬러프린터,컴퓨터,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소프트웨어,컴퓨터기억장치,컴퓨터모니터,컴퓨터모니터용 프로그램,컴퓨터용 디스크드라이브,컴퓨터용 손목 지지대,컴퓨터용 인터페이스,컴퓨터용 자기테이프장치,컴퓨터용 주크박스,컴퓨터용 프린터,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컴퓨터주변기기,컴퓨터키보드,케이블점검패널,코드화된 자기카드,크레딧카드용 카드리더기,키보드,탁상용 전자계산기,태양광자동추적센서,터치패널,터치패드,통신용 컴퓨터,트랙볼,트랙볼 입력장치,판독기(데이터 처리장비),판매시점관리(POS)용 단말기,팩시밀리 프로그래밍용 컴퓨터소프트웨어,폐쇄회로,포켓용(휴대용) 컴퓨터,프로세서,플로터,플로피디스크,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필기용 휴대 컴퓨터,항공기 제어장치 관리용 컴퓨터,항공기용 비행시뮬레이터,홀로그램,휴대용 스캐너,휴대용 전자계산기,휴대용 전자계산기용 케이스,휴대용 전자번역기,CD-ROM,IC카드,LCD 대형스크린 표시장치,LCD(액정표시장치)패널,PDA,TV세트용 동전작동식 기계장치,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다이오드,대규모 집적회로(LSI),레이저 다이오드,반도체,반도체메모리,반도체메모리장치,반도체소자,반도체웨이퍼,반도체전원소자,발광다이오드,웨이퍼,인쇄회로기판용 시험기구,전기다이오드,전자반도체,전자집적회로,전자회로기판,전자회로용 커넥터,집적회로,집적회로가 내장된 회로기판,집적회로모듈,초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칩[집적회로],탄화규소 다이오드,터미스터,트랜지스터,포토다이오드,프린트회로(回路),회로기판,다중콘센트용 소켓블럭,대음극(對陰極),소거용 자석,소켓/플러그 및 기타 접점(전기 코넥터),소켓{전구소켓은 제외},안전용 콘택트플러그,양극,용접용 전극,음극,음극용 부식방지장치,자석,자석심,장식용 자석,전극,전기 콘센트 덮개,전기소켓,전기플러그,전자석,집전극,플러그,플러그 어댑터,플러그/소켓 및 기타 접점(전기 코넥터),휴대용 소켓,흑연전극,개호출용 호각,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nose clip),레귤레이터,부대(浮袋),수영용 노즈클립,신호용 호각,에르고미터(ergometer),공업용 X-선 방호장갑,귀마개{산음용},방음용 귀마개{의료용은 제외},방호용 귀마개,방호용 장갑,사고방지용 석면장갑,사고방지용 장갑,잠수용 장갑,보호헬멧,스포츠용 보호 헬멧,스포츠용 헬멧,승마헬멧,오토바이용 헬멧,오토바이운전자용 헬멧,용접용 헬멧,용접작업용 헬멧,헬멧,가스마스크,공기여과용 마스크,방독마스크,방독면,방진고글 및 방진마스크,방진마스크,방호용 마스크,보호마스크,보호헬멧용 페이스실드(안면보호대),안면보호용 실드(shields),용접마스크,작업용 안면보호기구,치아보호구,호흡마스크용 여과기,방호용 피복,방화용 비행복,방화용 석면피복,방화피복,비행용 보호복,사고/방사선조사(照射)/화재대비용 피복,살균처리된 실험실 복,잠수복,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레코드판,레코드플레이어용 바늘,레코드플레이어용 바늘교환장치,레코드플레이어용 속도조절기,레코드플레이어용 톤암(Tone arms),메트로놈(Metronomes),수동축음기,음반,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자기식 열쇠카드,자기식 전철표,자기식 전화카드,자기식 카드,자기식 크레딧카드,자기식 ID카드,자기식(磁氣式) 신분카드,노광(露光)된 슬라이드필름,노광(露光)된 영화필름,노광(露光)된 필름,노광(露光)된 X-선필름,만화영화,슬라이드필름,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복사기,귀마개,고글,디스크,테이프,CD,DVD,보일러 제어기구,비상용 및 구멍용 장치,시청각교육장치,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 및 동전작동식 기계장치,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철도수송용 안전기구,카메라 및 모니터용 마운트(고정) 장치,

[Class 11] 치과용 오븐[덴탈오븐(dental oven)],일회용 살균봉투,가스그릴,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가정용 식기소독기,가정용 정수기,로스터용 꼬치,바비큐용구,요리용 링,요리용 번철 장치,요리용 석쇠장치,음료수 여과필터,토스터{비전기식},회전식 고기굽는기구,가정용 얼음냉장고{전기식은 제외},가정용 얼음통{휴대용은 제외},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얼음냉장고,가스레인지,가스레인지 가방,가스버너,가스버너용 선반받이,가스콕,가정용 가스오븐,가정용 석유풜로,가정용 제빵용 오븐,공업용 조리오븐,과일로스터,

내화점토제 오븐부속품,로스터,로스터회전기,맥아용 로스터,바비큐 그릴용 용암석,백열버너,버너{실험실용은 제외},빵굽는 기계,산수소(酸水素)버너,산업용 전자레인지,살균용 버너,석유버너,석유풀로,아교가열장치,아세틸렌버너,알콜버너,열풍식 오븐,오븐,오븐용 구조판,오븐용 금속제 구조물,오븐용 성형부속품,오일버너,접시데우는 기구,제빵용 오븐,주방용 오븐레인지,캠핑용 버너,커피로스터,토제품로,풍로,훈육기,휘발유버너,가스대,싱크대,조리대,주방용 싱크대,발광성 가옥번호판,발열팩,탕파(湯婆),휴대용 난로,수족관용 여과장치,수족관용 히터,대소변용 스퍼드,변기,변좌,비데(bidet),세척수 분사기 장착식 변기장치,소변기,수세식 변소용 소독제 디스펜서,위생설비용 소변기,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가열다리미용 히터,비전기식 족온기,샤우나 욕조설비,샤워기,샤워스탠드,샤워실,샤워욕조,샤워플랫폼,세면기{위생설비의 부품},세면대,손샤워기,열기욕조용 부속품,온천욕용 욕조,욕조,욕조라이닝,욕조배관 고정구,욕조설비,욕조용 부속품,이발소용 세면대,조립목욕실,좌욕용 욕조,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일광욕 침대,가스난로,가스스토브,가정 실내난방용 가스스토브,가정 실내난방용 석유스토브,가정 실내난방용 석탄스토브,가정용 난로,공기재열기(再熱器),난로,난로{전기난로는 제외},난방용 뿔뿔,난방용 라디에이터,난방용 스토브,난방팬(Warming pans),라디에이터 캡,석유스토브,석탄스토브,스토브,온기로,욕조용 히터,전기식 가열필라멘트,전기식 난방장치,전기식 라디에이터,중앙난방설비용 팽창탱크,중앙난방용 라디에이터,화로,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가정용 가스온수기,가정용 보일러,가정용 전기식 방사히터,고체/액체/기체연료용 난방장치,공업용 온기난방기구,공업용 온수난방기구,공업용 증기난방기구,난방보일러용 급수장치,난방보일러용 송기관(送氣管),난방보일러용 파이프,난방설비,난방설비용 보일러관,난방용 발열체,난방용 보일러,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난방장치,물가열기,보일러{기계부품은 제외},비수송기계기구용 스토커(석탄 공급장치),세탁실용 보일러,순간온수기,열펌프,온기난방기구,온도자동조절장치용 밸브{난방설비의 부품},온수기,온수난방기구,온수난방설비,온풍장치,전기보일러,중앙난방방열기용 가습기,증기난방기구,증기난방설비용 공기밸브,증기발생설비,증기보일러{기계부품은 제외},증기축압기,축열기,축열식 열교환기,태양열온수기,투입히터,가스냉장고,공기냉각장치,공업용 국소유도식 에어컨디셔너,공업용 에어컨디셔닝장치,공업용 중앙 에어컨디셔닝 설비,공업용 창문 거치형 에어컨디셔너,냉각기,냉각기기 및 설비,냉각돔,냉각설비 및 기계,냉각용 장치 및 설비,냉각장치 및 기계,냉각증발기,냉각탑,냉각통,냉동기,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냉장실,냉장용기,냉장캐비닛,룸쿨러,물냉각설비,액체용 냉각설비,에어컨디셔너,에어컨디셔너용 여과기,에어컨디셔닝설비,에어컨디셔닝장치,에어컨디션용 팬,에어컨디션장치용 팬,용광로용 냉각기,진열용 냉장캐비닛,가정용 레인지후드[배기후드],굴뚝용 송풍기,실험실용 환기후드,주방용 환기후드,환기[공기조절]장치 및 설비,환기후드,환풍기,환풍기용 팬,환풍장치 및 설비,가스등,가스맨틀,등불,램프,램프갓,램프갓 지지구,램프등피,램프용 반사경,램프용 버너,램프용 유리기구,비전기식 조명기기,사기등잔,용접용 램프,유등(油燈),초롱,컬링램프,호롱,헛불,수도꼭지용 좌금[와셔],가정용 오수정화조,굴뚝연관,급수설비,급수전,도수관설비,배수설비,분수장치,삼조식 분뇨탱크,석유공업용 화염도관,석유정제장치용 화염도관,세류관개용 급수기,수도관용 혼합 탭,수도꼭지,수세식 세정설비,수세식 탱크,압력수조(水槽),위생설비용 도관,위생설비용 수도관,위생장치 및 설비,음용 분수,인분처리설비장치,장식용 분수,태양열집열판,파이프용 마개,수세식 변소,이동식 간이화장실,실험실용 가열기기,실험실용 램프,실험실용 버너,이화학기구용 가열판,이화학기구용 열판,화학기계기구용 열판,선박용 냉난방장치,선박용 라이트,선박용 반사경,선박용 방향표시등,선박용 방향표시전구,선박용 방현(防眩)장치,선박용 서리제거장치,선박용 에어컨디셔너,선박용 조명기기,선박용 헤드라이트,선박용 환기설비,선박용

히터,항공기용 냉난방장치,항공기용 라이트,항공기용 반사경,항공기용 방향표시등,항공기용 방향표시전구,항공기용 방현(防眩)장치,항공기용 서리제거장치,항공기용 에어컨디셔너,항공기용 조명기기,항공기용 조명설비,항공기용 헤드라이트,항공기용 환기설비,항공기용 히터,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철도차량용 라이트,철도차량용 반사경,철도차량용 방향표시등,철도차량용 방현(防眩)장치,철도차량용 보일러{엔진보일러는 제외},철도차량용 서리제거장치,철도차량용 스토커,철도차량용 에어컨디셔너,철도차량용 조명기기,철도차량용 헤드라이트,철도차량용 환기설비,철도차량용 히터,오토바이용 라이트,자동차용 냉난방장치,자동차용 라이트,자동차용 반사경,자동차용 방향표시등,자동차용 방향표시전구,자동차용 방현(防眩)장치,자동차용 서리제거장치,자동차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조명기기,자동차용 헤드라이트,자동차용 환기설비,자동차용 히터,자전거용 라이트,자전거용 램프,자전거용 조명기기,농업용 건조장치,농업용 살수기(撒水機),농업용 살수장치,사료건조장치,가스발생설비,가스세정기,가스응축기,가스정화장치,가정용 공기정화기,가정용 물이온화장치,가정용 전기식 목욕수 정화장치,건조장치,건조장치 및 설비,공기건조기,공기건조장치,공기살균기,공기여과설비,공기정화장치,공기정화장치 및 기계,공기처리용 이온화장치,공기탈취장치,공업용 공기정화기,공업용 물정화장치,공업용 색층분석장치,공업용 식기소독장치,공업용 제습기,공업용 증기과열기(過熱機),담수화설비,무균장치,물살균소독장치,물여과장치,물연화장치,물연화장치 및 설비,물정화설비,물정화장치,물정화장치 및 기계,비의료용 훈증소독장치,비인체용 방취장치,살균기,소독장치,수돗물 정화장치,수영장용 염소살균장치,아세틸렌 제조기,아세틸렌발생기,열교환기,오일정제장치,음료수여과기,정수장치,중합(重疊)설비,증류기,증류용 정화탑,증류장치,증류탑,증발장치,증자기,청정실,취수장치,하수용 정화설비,화학기계기구용 건조장치,화학처리용 열교환기,화학처리용 증류기,화학처리용 증발장치,우유냉각설비,우유살균기,유기식품 탈수장치,음료냉각장치,제빙기,제빙장치 및 기계,제빙장치 및 설비,파스퇴르살균기,가마,가마용 부착품,가정용 쓰레기 소각로,건유로,공업용 가스 발생로,공업용 가열로,공업용 균열로(均熱爐),공업용 노(爐),공업용 도가니,공업용 석회가마,공업용 쓰레기 소각로,공업용 열풍로,공업용 용융로,공업용 전기로,공업용 탄화로,공업용 회전식 가마,노(爐),노(爐)용 불격자,노(爐)용 성형부속품,노(爐)용 재받이통,도구야금로,반사로,비실험실용 노(爐),소각로,소결로,소둔로,쓰레기 소각로,용광로,용광로용 투입장치,용선로,원자로,이동식 금속가열로,재운반용 자동설비,전기로,전로,코크스로,태양로,평로,핵연료 및 핵반응감속재의 처리용 설비,훈철로,회전로,담배 로스터(roaster),담배용 냉각장치,가로등,갭내안전등,공기정화용 살균램프,광부용 램프,네온등,랜턴,발전등,방전등용 기구,백열전구,백열전등기구,비의료용 자외선램프,살균등,상들리에,소형전구,쇼케이스용 조명장치,수상등,수은등,수족관용 전등,스포츠라이트,아세틸렌 조명기,아크등,아크등용 탄소,안전램프,야외용 램프,영사기용 램프,오버헤드램프,잠수용 조명기구,장식등,적외선전구,전구,전구용 필라멘트,전기식 회중전등,전기조명기구,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전등용 소켓,조명용 랜턴,조명용 마그네슘필라멘트,조명용 발광관,조명용 방전관,조명용 산광기(散光器),조명용 전기식 방전관,조명장치 및 설비,조명전등,집어등,천정등,촉제장식용 장식등,크리스마스트리용 전등,탁상스탠드램프,탐조등,태양등,투광등,형광등,형광등용 관,회중전등,가습기(加濕器),가습기(加濕器){가정용/전기식},가정용 전기냉동기,가정용 전기냉방장치,가정용 전기냉장고,가정용 전기담요{비의료용},가정용 전기식 냄비,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가정용 전기식 의류건조장치,가정용 전기식 정수기,가정용 전기식 주전자,가정용 전기식 커피제조기,가정용 전기토스터,가정용 전기풍로,가정용 전기화로,가정용 전자기 유도식 조리기,가정용 제습기{전기식},개인용 전기식 선풍기,개인용 전기족온기,냉장고,모발건조기(頭髮乾燥機),비의료용 전기담요,비의료용 전기방석,

비의료용 전열식 쿠션[패드],선풍기,세면실용 손건조장치,세탁용 구리가마,안면용 증기발생기,요리용 전자렌지,전기냉장고,전기냉장쇼케이스,전기레인지,전기스토브,전기식 보온용 발싸개,전기식 세탁물건조기,전기식 압력소스냄비,전기식 압력솥,전기식 와플 굽는 틀,전기식 요구르트제조기,전기식 요리용구,전기식 우유병 가열기,전기식 주전자,전기식 커피기계,전기식 커피여과기,전기식 커피퍼컬레이터(Percolators),전기식 프라이팬,전기연탄가스배출기,전기이불,전기족온기,전기커피포트,전기쿠커,전기탈수기,전기토스터,전기풍로,전열식 카펫,전자레인지,침대보온기,침대보온기{비의료용/전기식},가스점화기,가스점화기{흡연용은 제외},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점화기{흡연용은 제외},가정용 얼음냉장고,수송기계기구 유리창서리제거용 가열장치,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조명부품},수송기계기구용 서리제거장치,수송기계기구용 에어컨디셔너,수송기계기구용 환기(공기조절)설비,수송기계기구용 히터,수송기계기구용 라이트,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수송기계기구용 방향표시전구,수송기계기구용 조명장치,수송기계기구용 헤드라이트,요리용 기구 및 설비,요리용구(Cookers),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증류/난방/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 Reproduction of the mark:

BALGA

* Goods/services of the applied-for mark in relation to this ground:

[Class 20] Office furniture; desks; tea tables; mattresses; sofas; book shelves; rocking chairs; chairs [seats]; works of art made of bamboo; tables.

10. Guidance for the response:

It is suggested that you may choose one of responses as below

A. Response before KIPO

- (1) In order to respond to this provisional refusal before KIPO directly [Article 66(1), Korean Trademark Act], the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obliged to be represented by a licensed attorney who is entitled to represent third par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6, Korean Trademark Act]
- (2) Time limit is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otification of this provisional refusal is issued. The holder may request an extension of time to submit a written opinion/amendment to KIPO. The extension can be permitted twice for a period of one month respectively. The request for extension must be made within the given time limit. [Article 17(1)(i), Korean Trademark Act]

B. Response before WIPO

The holder may submit a limitation of the list of goods and/or services (MM6 form) before WIPO directly within the given time limit. [Rule 25 (1)(a)(ii), Common Regulations]

11. Official Seal or Signature by the Office:

KIPO Examiner JANG, Seong Gwon 

<< Information >>

If the holder has any questions or needs assistance in responding to this notification, please contact the examiner.

E-mail: kipomadrid@korea.kr, Telephone: (+82) (42) 481 5234 ,Fax: (+82) (42) 472 3507

Extract from the Korean Trademark Act

Article 3 Persons Entitled to Registration of Trademark

(1) Any person who uses or intends to use a trademark in the Republic of Korea may obtain registration of his/her trademark: Provided, That no employe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obtain registration of a trademark while he/she is in office, except by inheritance or bequest.

Article 6 Trademark Manager of Non-Resident

(1) Except where a person who is not domiciled or does not have his/her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n-resident")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non-resident (in cases of a corporation, referring to the representative thereof) may follow trademark-related procedures or bring a lawsuit against measures taken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only through a person who is domiciled or has his/her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demark manager") as an agent managing the trademark of the non-resident.

(2) A trademark manager shall represent his/her principal in a lawsuit with respect to trademark-related procedures or a disposition made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delegated to him/her.

Article 220 Service on Non-Resident

(1) Where a non-resident has a trademark manager, any document to be served on such non-resident shall be served on his/her trademark manager: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an examiner notifies an applicant for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of grounds for rejection via the International Secretariat pursuant to Article 190.

(2) Where a non-resident does not have a trademark manager, any document to be served on such non-resident may be sent by registered airmail.

(3) Where a document is sent by registered airmail pursuant to paragraph (2), such document shall be deemed served on the date the document is sent.

Article 33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1) Trademark registration may be obtained, excluding the following trademarks:

1. A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mark indicating, in a common manner, the common name of the goods;
 2. A trademark used customarily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3. A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mark indicating, in a common manner, the place of production, quality, raw materials, effect, usage, quantity, shape, price, method of production, method of processing, method of use or time of the goods;
 4. A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the abbreviation thereof, or a map;
 5. A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mark indicating a common surname or name according to the method in common use;
 6. A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simple and readily available mark;
 7. In addition to trademark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6, a trademark which is unrecognizable for consumers to identify which goods related to whose business it indicates.
- (2) Even if a trademark falls under any of paragraph (1) 3 through 6, where such trademark is recognizable to consumers as a trademark indicating the source of goods of a specific person as a result of using the trademark before filing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rademark registration may be granted limited to the goods on which such trademark is used.
- (3) Even if a mark falls under paragraph (1) 3 (limited to place of production) or 4, where such mark is a geographical indication for specific goods, an applicant may obtain registration of a collective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for goods using such geographical indication as designated goods (referring to the goods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38 (1) and the goods additionally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86 (1);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 34 Trademarks Ineligible for Trademark Registration

(1) Notwithstanding Article 33, none of the following trademarks shall be registered:

1. Any of the following trademarks, which is a national flag of a country, an insignia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etc.:

(a) Any trademark identical or similar to the national flag, the national emblem, the colors, medals, decorations or insignia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seals or signs used for supervision or certific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or public institutions;

(b) Any trademark identical or similar to any national flag of a country of the Union to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is Convention"), of a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r of a Contracting Party to the Trademark Law Treaty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countries of the Union, etc.");

(c) Any trademark identical or similar to the title, abbreviated title, or mark of the Red Cros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or a renown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vided, That where such organization has applied for trademark registration of its title, abbreviated title, or mark, trademark registration may be obtained;

(d) Any trademark identical or similar to coats of arms, flags, medals, decorations or badges of the countries of the Union, etc.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fter notification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ursuant to Article 6-3 of the Paris Convention, or titles, abbreviated titles, coats of arms, flags, medals, decorations or badges of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countries of the Union, etc. have joined: Provided, That where an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the countries of the Union, etc. have joined applies for trademark registration of its title, abbreviated title, or mark, trademark registration may be obtained;

(e) Any trademark identical or similar to seals or signs used for supervision or certification by countries of the Union, etc.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fter notification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ursuant to Article 6-3 of the Paris Convention or their public organizations, which is used for the goods identical or similar to those for which such seals or signs are used;

2. Any trademark which falsely indicates a relationship with a state, race, ethnic group, public organization, religion, or famous deceased person, or which slanders, insults, or is likely to defame any of them;

3. Any trademark identical or similar to a famous mark, which is a mark indicating nonprofit business or public service of a state, public organization, or any of its agencies and a non-profit corporation: Provided, That where such state, etc. has applied for trademark registration of its mark, trademark registration may be obtained;

4. Any trademark whose meaning, content, etc. conveyed to consumers is likely to harm public order, such as being contrary to moral norms, the prevailing moral sense of ordinary people, where the trademark itself is used or the trademark is used for goods;

5. Any trademark consisting of a mark identical or similar to a medal, certificate of merit or decoration awarded at an exhibition held by or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t an exhibition held by or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who has been awarded at such exhibition uses such mark as part of the trademark for the awarded goods, trademark registration may be obtained;

6. Any trademark containing the name, title, or trade name, portrait, signature, seal, literary name, stage name, pen name of a prominent person, or his/her abbreviated title: Provided, That where the consent of such person has been obtained,

trademark registration may be obtained;

7. Any trademark used for good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registered trademark of another person (excluding any registered collective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based on first to file;

8. Any trademark used on goods recognized as identical to the designated goods,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registered collective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of another person based on first to file;

9. Any trademark identical or similar to a trademark (excluding a geographical indication) widely recognized by consumers as indicating the goods of another person, which is used on good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goods of another person;

10. Any trademark identical or similar to a geographical indication of another person widely recognized by consumers as indicating the goods of a specific region, which is used on goods recognized as identical to the goods using such geographical indication;

11. Any trademark likely to cause confusion with goods or business of another person remarkably recognized by consumers or to dilute their distinctiveness or reputation;

12. Any trademark which is likely to mislead consumers about the quality of goods or deceive consumers;

13. Any trademark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trademark (excluding a geographical indication) recognized as indicating the goods of a specific person by consumers in the Republic of Korea or overseas, which is used for unlawful purposes, such as unjust enrichment or inflicting loss on the specific person;

14. Any trademark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geographical indication recognized as indicating the goods of a specific region by customers in the Republic of Korea or overseas, which is used for unlawful purposes, such as unjust enrichment or inflicting loss on any legitimate users of such geographical indication;

15. Any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the three-dimensional shape, color, combination of colors, sound, or smell, which is essential (in cases of services, referring to cases essential for the use and purpose thereof) to secure the function of goods intended to obtain trademark registration or of the package of such goods;

16. Any trademark intended to be used on wine or distilled beverages, which consists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of the place of production of wine or distilled beverages or contains such geographical indication in a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ovided, That where a legitimate user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applies for registration of a collective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under Article 36 (5) by designating the relevant goods as the designated goods, he/she may obtain trademark registration;

17. Any trademark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name of a variety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109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which is used for good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name of such variety;

18. Any trademark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geographical indication of another person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32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which is used on goods recognized as identical to the goods using such geographical indication;

19. Any trademark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geographical indication of another person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a bilateral or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which has come into effect, concluded by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foreign country or foreign countries, or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such geographical indication, used on goods deemed identical to the goods using such geographical indication;

20. Any trademark for the registration of which an applicant applies on goods,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such trademark, while he/she is aware that another person uses or intends to use the trademark through a contractual relationship, such as partnership or employment, or business transactional relationship, or any other relationship;

21. Any trademark for the registration of which any person who has or had a contractual relationship, such as partnership or employment, business contractual relationship, or any other relationship with a person who holds the right to the trademark registered,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trademark registered in a State party to the treaty, applies on goods by designating good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goods on which the trademark is designated as the designated good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holds the right to the trademark.

(2) Whether paragraph (1) and an applicant for trademark reg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nt") correspond to another person under the relevant provision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a decision corresponding to any of the following is ma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cision on whether to grant trademark registration"): Provided, That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11, 13, 124, 20 and 21, whether an applicant corresponds to another person under the relevant provision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s filed:

1. Decision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Article 54;

2. Decision to grant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Article 68.

(3) Where a trial to revoke trademark registration is requested because a trademark right holder or a person who uses a trademark of such trademark right holder falls under Article 119 (1) 1 through 3 and 5 through 9, and he/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fter the date such lawsuit is commenced, he/she may obtain trademark registration only where he/she applies for registration of a trademark identical or similar to such trademark (limited to where he/she intends to obtain trademark registration again by designating identical or similar goods (in cases of a collective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referring to goods deemed identical) as the designated goods) after three years from the date he/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Where trademark rights are extinguished upon expiry;

2. Where a trademark right holder relinquishes trademark rights or abandons some of the designated goods;

3. Where a trial decision to revoke trademark registration is final and conclusive.

(4) Non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8 and 10 shall apply to homonymous collective marks with a geographical indication.

Article 35 First to File

(1) Where at least two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are filed on different days with respect to the same or similar trademark to be used on the same or similar goods, only the first person who files an application may obtain registration of such trademark.

Article 38 One Application for One Trademark

(1) Any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each trademark by designating at least one category of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fication of goods.

(2) Specific good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goo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and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 No classification of any category of goo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strued as prescribing the range of similarity of goods.

Article 54 Decision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Where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 examiner shall decide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1. Where a trademark fails to meet the definitions of a trademark, collective mark,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certification mark, certification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or business emblem under Article 2 (1);

2. Where a trademark is in violation of the treaty;

3. Where a trademark cannot be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s 3, 27, 33 through 35, 38 (1), the latter part of Article 48 (2), paragraph (4) or (6) through (8) of the aforesaid Article;

4. Where a person is not entitled to registration of a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and business emblem under Article 3;

5. In cases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collective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n organization

actually do not permit persons to join the organization as its members, such as the prohibition of persons from joining the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impracticable conditions for joining the organization are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6. Where all or some of the matters concerning the use of a collective mar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not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under Article 36 (3), or all or some of the matters concerning the use of a certification mar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not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rules under paragraph (4) of the aforesaid Article;

7. In cases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certification mark,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ctually do not permit persons who may use such certification mark to use it, such as the prohibition of persons from using i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rul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impracticable conditions of use thereof are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rules.

Article 55 Notification of Grounds for Rejection

(1) Where an examiner intends to decide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54, he/she shall notify an applicant of grounds for rejection (referring to grounds provided in any of the subparagraphs of the aforesaid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ounds for rejection") in advance. In such cases, the applicant may submit a written opinion about grounds for rejection within a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 Where an examiner notifies an applicant of grounds for rej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he/she shall specify the grounds and basis for rejection of each of the designated goods.

(3) An applicant who fails to submit a written opinion within a perio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2) may apply for continuing trademark-related procedures and submit a written opinion addressing the grounds for rejection within two months from the expiration date of such period.

Article 115 Trial against Decision to Dismiss Amendment

Where a person who receives a decision to dismiss an amendment under Article 42 (1) appeals against such decision, he/she may request a tria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she is served with a certified copy of such decision.

Article 116 Trial against Decision to Reject

Where a person who receives a decision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decision to reject registration of additional designated goods or decision to reject registration of the conversion of the classification of goo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cision to reject") under Article 54 appeals against such decision, he/she may request a tria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she is served with a certified copy of such decision to reject.

Korean Trademark Act URL: <http://www.kipo.go.kr/eng/>